



**제1608호**

**2021년 4월 30일**

**금요일**

|                |       |
|----------------|-------|
| <b>선<br/>람</b> | 기관의 장 |
|                |       |

**조 레**

|     |            |                                      |             |
|-----|------------|--------------------------------------|-------------|
| ○ 조 | 레 제 1781 호 | 남동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 감 사 실       |
| ○ 조 | 레 제 1782 호 | 남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감 사 실       |
| ○ 조 | 레 제 1783 호 | 남동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안 전 총 팔 과   |
| ○ 조 | 레 제 1784 호 | 남동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 문 화 관 광 과   |
| ○ 조 | 레 제 1785 호 | 남동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 토 지 정 보 과   |
| ○ 조 | 레 제 1786 호 | 남동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                     | 세 무 과       |
| ○ 조 | 레 제 1787 호 | 남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 세 무 과       |
| ○ 조 | 레 제 1788 호 | 남동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조례                  | 기 업 지 원 과   |
| 조   | 레 제 1789 호 | 남동구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 기 업 지 원 과   |
| 조   | 레 제 1790 호 | 남동구 장애인 보조견 생활이용편의 지원 조례             | 노 인 장 애 인 과 |
| 조   | 레 제 1791 호 | 남동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 여 성 가 족 과   |
| 조   | 레 제 1792 호 | 남동구 아동위원 및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 아 동 복 지 과   |
| 조   | 레 제 1793 호 | 남동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아 동 복 지 과   |
| 조   | 레 제 1794 호 | 남동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                 | 아 동 복 지 과   |
| 조   | 레 제 1795 호 | 남동구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       | 청 소 행 정 과   |
| 조   | 레 제 1796 호 | 남동구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 환 경 보 전 과   |
| 조   | 레 제 1797 호 | 남동구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 방 재 하 수 과   |
| 조   | 레 제 1798 호 | 남동구 빈집 정비 지원 및 관리 조례                 | 건 축 과       |
| 조   | 레 제 1799 호 | 남동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 보 건 행 정 과   |
| 조   | 레 제 1800 호 | 남동구 음식문화거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식 품 위 생 과   |
| 조   | 레 제 1801 호 | 남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 의 회 사 무 국   |

|                |  |  |  |  |  |  |  |  |
|----------------|--|--|--|--|--|--|--|--|
| <b>회<br/>람</b> |  |  |  |  |  |  |  |  |
|----------------|--|--|--|--|--|--|--|--|

**공 고**

- 공 고 제 8 6 0 호 공무원 노동조합 해직공무원 및 징계공무원 심의, 결정 총 무 과  
신청 안내 공고
- 공 고 제 9 3 1 호 음실천 소하천정비종합계획(변경)(안) 전략환경영향평 방 재 하 수 과  
가 주민 등의 의견 수렴결과 및 반영 여부 공고

**고 시**

- 고 시 제 7 6 호 소하천 예정지의 지정 및 지형도면에 관한 고시 방 재 하 수 과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남동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남 동 구 청 장 이 강 호

2021년 4월 30일

남동구 조례 제1781호

## 남동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환경의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 간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2. "직장"이란 남동구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터를 말한다.

3. "직원"이란 직장에 근무하는 모든 인력을 말한다.

4. "피해 직원 등"이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피해를 입은 직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직원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직원 상호간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 및 괴롭힘 예방 및 금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를 위한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을 목격하였거나 인지하였을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③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를 방해하거나 피해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

② 구청장은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신고와 구제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제6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신고를 접수하거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상담 및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 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치를 하기 전에 피해 직원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7조(직장 내 괴롭힘 상담)** 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지정한다.

② 상담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③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8조(직장 내 괴롭힘 피해 직원 등 보호)** ① 구청장은 제6조제1항의 사실 확인 기간에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 직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해 직원 등의 의견을 들어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심리상담 등 피해 직원 등의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조사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인정된 경우 피해 직원 등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

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해 직원 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된다.

**제9조(불이익 조치 금지 등)** 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상담, 조사 및 협력 등을 이유로 관련 직원(피해 직원 등, 조사 등에 협력하는 직원 등을 말한다)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된다.

②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신고·상담·조사·협력 등을 방해하는 행위는 추가적인 괴롭힘 행위로 간주한다.

**제10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와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1조(허위신고)** ① 신고자가 신고내용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익명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② 구청장은 신고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2조(비밀유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상담·조사·조치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3조(개선권고)** 구청장은 구 소관 공직유관단체의 장에게 직장 내 괴롭힘 예

방 및 금지에 대한 제도개선, 시정조치 등의 권고를 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제안이유

- 남동구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행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 주요내용

- 조례 목적 및 정의 (제1조~제2조)
- 구청장의 책무(제3조)
-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구제절차(제4조~제7조)
- 피해 직원 등의 보호 및 불이익 금지 조치(제8조~제9조)
-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제10조)
- 허위신고 시 조치사항(제11조)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남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이 강 호**

2021년 4월 30일

남동구 조례 제1782호

남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5명”을 “7명”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법관, 교육자 또는”을 “판사·검사·변호사, 교육자,”로 한다.

제5조의2 중 “정례회에 전년도 재산등록”을 “정례회 개최 전까지 전년도의 재산등록,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으로 “감독”을 “감독,”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제안이유

- 상위법령인 「공직자윤리법」 개정(2020.12.22. 공포, 2021. 6.23. 시행 예정)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 □ 주요내용

- 남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인원 정비 : (제2조제1항)
  - (현행) 5명 → (개정) 7명
- 연차보고서 제출사항 정비 : (제5조의2)
  - 제출시기 : (현행) 제2차 정례회에 → (개정) 제2차 정례회 개최 전까지
  - 제출내용 : (현행) 전년도 재산등록 →  
(개정) 전년도 재산등록,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신설)

##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남동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남 동 구 청 장 이 강 호

2021년 4월 30일

남동구 조례 제1783호

## 남동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보호와 공공의 안녕질서, 문화·예술·체육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남동구 지역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옥외행사”란 주된 행사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다중(多衆)이 참여하는 공연, 축제, 체육 등과 같은 대규모 행사를 말한다.
2.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공연”이란 음악·무용·연극·연예·국악·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實演)에 의하여 공중(公衆)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축제”란 특정한 날을 기념하고, 주민의 화합과 지역문화를 선양하기 위하여 벌이는 큰 규모의 경축행사를 말한다.
5. “체육”이란 운동경기·야외운동 등 신체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6. “주최”란 행사를 개최하는 기관이나 단체·회사를 말하며, 그 행사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책임과 권한을 갖는 것을 말한다.
7. “주관”이란 주최의 의뢰를 받아 행사를 진행하고 집행하는 기관이나 단체·회사를 말하며(주최자가 직접 주관하는 경우도 있음), 주관의 대가는 유상 또는 무상으로 할 수 있고, 그 행사의 최종 책임자는 아닌 것을 말한다.
8. “후원”이란 상업적인 목적이나 금전의 대가없이, 행사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거나 권위를 부여해 주는 역할을 하는 기관이나 단체·회사를 말한다.
9. “관계인”이란 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 등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10. “안전관리요원”이란 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 등의 이용 상태와 행사 참가자 및 관람객의 안전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내에서 열리는 옥외행

사 중 순간 최대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옥외행사에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을 따른다.

1. 구 또는 구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
2. 구 또는 구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후원하는 행사
3. 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조금 지급대상 기관 및 단체가 옥외행사를 개최하는 때에는 제6조의 신고의무를 보조금 교부조건으로 부가하여야 한다.

**제5조(구민의 책무)** 남동구민은 구에서 개최되는 각종 옥외행사의 안전관리 업무에 최대한 협조하고,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등으로부터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관리계획의 신고의무 등)** ① 제3조에 따른 옥외행사 주최자는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행사개시 7일전까지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관리계획을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행사 개최 1일전까지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행사일시·장소
2. 행사주최·주관·후원
3. 행사의 주요내용, 출연자, 참여 예정인원 등
4.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임무 및 안전관리 조직에 관한 사항
5. 현장의 위험요소(시설 등)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6. 비상시에 해야 할 조치 및 연락처에 관한 사항
7.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받은 안전관리계획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시설의 안전점검)** ① 제6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신고 받은 때에는 구청장은 해당 행사 개시 1일전까지 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사 주최자 및 점검시설의 관계인을 안전점검에 참여시켜야 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한 사항은 관할 소방서장, 경찰서장 등에게 합동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안전점검 후에 행사 주최자에게 안전지도를 할 수 있고, 행사 종료 시까지 안전관리요원으로 하여금 안전관리 및 재난예방활동을 계속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공공의 안녕질서 지원요청)** ① 구청장은 옥외행사장의 안전관리요원 배치사항을 점검하고, 질서유지와 교통안전이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

에게 안전관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요청을 받은 경찰서장은 행사 주최자와 협의하여 최소한의 교통 통제와 질서 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고, 안전관리요원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재난예방조치 등)** ① 구청장은 옥외행사에 따른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행사 주최자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옥외행사에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관할 소방서장에게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긴급안전점검 결과 재난위험이 높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최자 또는 관계인에게 안전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다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어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행사를 금지시킬 수 있다.

1. 제3항의 명령을 받은 자가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그 밖에 행사 전 또는 행사 중 예상하지 못한 위험요소가 발생하여 예정대로 행사가 진행될 경우 사고발생이 예견되는 때 등

**제10조(응급 의료지원 요청)** 구청장은 옥외행사에 따른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구 소재 의료기관에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주최자의 준수사항 권고)** ① 구청장은 참가자 및 관람객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보장할 수 없는 경우 그 옥외행사의 중단을 주최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주최자에게 행사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안전관리요원으로 18세 이상의 사람을 임명할 것
2. 안전관리요원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전관리요원에게 완장, 모자, 어깨띠, 상의 등을 착용하게 할 것
3.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장소, 임무 등의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할 것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제안이유

- 남동구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 □ 주요내용

- 제정 목적, 정의 등에 관한 사항(제1조, 제2조)
-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제3조)
- 안전관리계획의 신고의무 등에 관한 사항(제6조)
- 시설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제7조)
- 공공의 안녕질서 지원요청에 관한 사항(제8조)
- 재난예방조치 등에 관한 사항(제9조)
- 주최자의 준수사항 권고 등에 관한 사항(제11조)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남동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남 동 구 청 장 이 강 호

2021년 4월 30일

남동구 조례 제1784호

## 남동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노래연습장업”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제3조(노래연습장업자 교육)**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해서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준수사항, 재난예방, 제도변경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연 3시간으로 한다.

④ 구청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제4조(교육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대상자
2. 교육일시 및 장소
3. 교육내용 및 방법
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
5. 강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5조(교육교재)**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때에는 교육교재를 제작하여 교육대상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 실시 방법)** ① 교육장소는 교육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좌석수와 교육대상자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반기별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노래 연습장을 신규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교육대상자의 교육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7조(교육강사)** ① 강사는 학계·관련 업계의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강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남동구 소속 공무원이 강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8조(교육통지서 송부)** 구청장이 교육을 하려는 때에는 교육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이수자 관리)** 구청장은 교육대상 업소 및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비치하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교육의 위탁)** ① 구청장은 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 제32조에 따라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의 보고)** 제10조에 따라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 받은 협회나 단체는 교육실시 결과를 교육실시 후 1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교육불참자 조치)** 구청장은 법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노래연습장업자에게 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며, 부과·징수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제안이유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 주요내용

-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사항: (제3조부터 제7조까지)
- 교육의 관리에 관한 사항(제8조 및 제9조)
-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의 위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10조 및 제11조)
- 교육불참자에 대한 조치 사항(제12조)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남동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남 동 구 청 장 이 강 호

2021년 4월 30일

남동구 조례 제1785호

## 남동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남동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남동구 주소정보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명주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의 산정 등) ① 구청장은 「도로  
명주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제5항과 제54조제6항의 규

정에 의한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 및 그 기준일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남동구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1. 남동구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과 관련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조달단가
  2.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구입비와 설치에 필요한 재료비 등을 포함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에 등록되지 않은 형태의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경우 실제 제작에 드는 비용
- ② 구청장이 교부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의 징수는 「남동구 수입증지 조례」를 따른다.

**제3조(광고의 비용)** 주소정보안내도 및 주소정보안내판에 광고를 게재하는 경우 영 제56조제5항에 따른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료
  - 가. 지방자치단체가 광고를 하려는 경우
  - 나.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하려는 경우
  - 다.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유료: 제1호 외의 경우는 구청장이 별도로 산정

**제4조(주소정보의 생활화 시책 추진)** 구청장은 주소정보의 생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른 지원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소정보를 안내하는 주소정보안내판 등의 시설의 설치

2. 버스정류장 및 철도역사(도시철도 역사를 포함한다), 여객자동차터미널, 여객터미널, 공항 등에 설치·표기하는 위치표시 등에 주소정보 사용
3. 관내 유관기관, 민간단체 등의 주소정보 사용을 촉진하는 사업
4. 남동구 단위의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보급
5. 그 밖에 구청장이 주소정보의 생활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9조에 따라 남동구 주소정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정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한다.

1. 소방, 경찰, 도로관리 등 주소정보와 관련된 관계공무원
2. 주소정보산업 및 도로교통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남동구의 특성과 역사, 지리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6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손해배상 공제가입)** 구청장은 주소정보시설로 인한 안전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법 제31조에 따라 손해배상공제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주소정보의 홍보·교육)** ① 구청장은 법 제31조에 따라 주소정보를 홍보하기 위하여 홍보물 등을 제작하여 주민에게 배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민방위·예비군 교육, 각종 단체의 회의·행사·교육 등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관내 교육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각급 학교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위탁)** ① 구청장은 주소정보 업무가 전국적으로 통일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법 제33조제2항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도로명판과 기초번호판의 설치에 관한 사항
2.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물번호판의 교부재교부에 관한 사항
3.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기본도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배포
5.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주소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6.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조사 및 조치
7. 영 제5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사물주소판의 교부 및 재교부에 관한

## 사항

8. 영 제59조에 따른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영 제6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주소정보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6호에 관한 사항을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제6호의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조사 및 조치에 대하여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주소정보시설의 종류, 수량, 위치
2. 계약기간 및 금액
3. 주소정보시설의 관리 및 정비계획
4. 주소정보시설의 일제조사 계획
5. 주소정보시설의 훼손·망실에 따른 조치계획
6. 주소정보시설의 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계획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토지 등의 출입증) ① 영 제75조제4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증표를 발급하거나 반납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16조에 따른 남동구 도로명주소위원회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남동구 주소정보위원회로 본다.

■ [별지 제1호서식]

(앞 쪽)

제 호

## 토지·건물등·시설물 출입증

사 진

3cm×4cm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성 명  
남 동 구60mm×90mm [백상지 150g/m<sup>2</sup>]

(색상: 연하늘색)

(뒤 쪽)

## 토지·건물등·시설물 출입증

소속/직급(직위):

성 명:

생년월일:

유효기간: . . .부터 . . .까지

위 사람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5조  
및 「남동구 주소정보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토지·건물등·시설물 등에 출입할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남 동 구 청 장 직인

1.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2.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이 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3. 이 증을 주우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 [별지 제2호서식]

## 토지·건물등·시설물 출입증 발급 대장

[illegible]210mm×297mm[백상지 80g/m<sup>2</sup>]

##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제안이유

- 「도로명주소법」이 전부개정 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반영하고,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개정 함으로써 주소정보 관리 효율성을 높이하고자 함

###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 (제1조)
- 건물번호판 ,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에 관한 사항 : (제2조)
- 주소정보안내판 광고에 관한 사항 : (제3조)
- 주소정보위원회에 관한 사항 : (제5조, 제6조)
- 손해배상 공제가입에 관한 사항 : (제7조)
- 주소정보의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 (제8조)
-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 : (제9조)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남동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남 동 구 청 장 이 강 호

2021년 4월 30일

남동구 조례 제1786호

## 남동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동구 구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제3조에”를 “제3조를”로 한다.

제3장제1절의 제목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세율) 법 제81조에 따른 사업소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세율: 법 제81조제1항제1호의 세율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세율
2. 연면적에 대한 세율: 법 제81조제1항제2호의 세율

제8조 중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제안이유

- 「지방세법」 일부 개정(법률 제17769호, 2020. 12. 29.)에 따른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조문을 개정하고,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른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 □ 주요내용

-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에 따른 세세목 명칭 변경(제7조, 제8조)
  - “재산분” → “사업소분”
-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주민세 세율 규정 정비(제7조)
  - 기본세율: 「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1호의 세율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세율
  - 연면적에 대한 세율: 「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의 세율



##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남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남 동 구 청 장 이 강 호

2021년 4월 30일

남동구 조례 제1787호

## 남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앞에 “제1장 총칙”을 삭제한다.

제2조 앞에 “제2장 감면”을 삭제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감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5조제1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공원이었다가 같은 법 제38조의2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지정된 토지·건축물·주택(각

용어의 뜻은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정의를 따른다)에 대해서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을 면제한다.

제8조 앞에 “제3장 보칙”을 삭제한다.

제14조제2항 중 “구청장이 제1항”을 “제1항”으로,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을 “구청장은 감면을 신청한 자(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에게”로,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를 “따른 감면 관련 사항을 안내”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별지 제1호서식]

지방세 감면 신청서

|                                                |                          |           |                  |
|------------------------------------------------|--------------------------|-----------|------------------|
| 접수번호                                           |                          | 접수일       | 처리기간 5일          |
| 신청인                                            | 성명(대표자)                  |           | 주민(법인)등록번호       |
|                                                | 상호(법인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 주소 또는 영업소                |           |                  |
|                                                | 전자우편주소                   |           | 전화번호<br>(휴대전화번호) |
| 감면대상                                           | 종류                       |           | 면적(수량)           |
|                                                | 소재지                      |           |                  |
| 감면세액                                           | 감면세목                     | 과세연도      | 기분               |
|                                                | 과세표준액                    | 감면구분      |                  |
|                                                | 당초 산출세액                  | 감면받으려는 세액 |                  |
| 감면 신청 사유                                       |                          |           |                  |
| 감면 근거규정                                        |                          |           |                  |
| 관계 증명 서류                                       |                          |           |                  |
| 감면 안내<br>방법                                    | 직접교부[ ] 등기우편[ ] 전자우편 [ ] |           |                  |
| 「남동구 구세 감면 조례」 제    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세 감면을 신청합니다. |                          |           |                  |
|                                                |                          |           | 년    월    일      |
| 신청인                                            |                          |           | (서명 또는 인)        |
| 남동구청장 귀하                                       |                          |           |                  |
| 첨부서류                                           | 감면받을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           | 수수료<br>없음        |

210mm×297mm(미색모조 80g/㎡)

[별지 제2호서식]

## 남동구

수신자

제 목 지방세 감면 안내

귀하가 년 월 일에 제출한 지방세 감면 신청에 대하여 「남동구 구세 감면 조례」 제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되었음을 안내합니다.

| 연도                    | 기분 | 세목                        | 과세번호 | 당 초<br>산출세액 | 감면액 | 납부할 세액 | 납부기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감면<br>사유              |    |                           |      |             |     |        |      |
| 감면의무<br>위반 시<br>추징 안내 |    | 근거규정                      |      |             |     |        |      |
|                       |    | 의무 준수 사항                  |      |             |     |        |      |
|                       |    | ○<br>※ 기재사항이 부족할 경우 별지 작성 |      |             |     |        |      |

끝.

남동구청장

직인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 - 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 - 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제안이유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 제17771호, 2020.12.29.)에 따른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에 따라 공원기능 보존을 위하여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지정되는 부동산의 재산세 감면 유지를 위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 □ 주요내용

-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조항 삭제(개정전 제2조)
-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재산세 감면 신설(제6조의2)
- 지방세 감면결정 및 감면결과통지 규정 정비(제14조)
  - ‘지방세 감면 결정 통지’를 ‘지방세 감면 안내’로 개정
  - 별지 제1호, 제2호서식 개정

##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남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남 동 구 청 장 이 강 호

2021년 4월 30일

남동구 조례 제1787호

## 남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앞에 “제1장 총칙”을 삭제한다.

제2조 앞에 “제2장 감면”을 삭제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감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5조제1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공원이었다가 같은 법 제38조의2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지정된 토지·건축물·주택(각

용어의 뜻은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정의를 따른다)에 대해서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을 면제한다.

제8조 앞에 “제3장 보칙”을 삭제한다.

제14조제2항 중 “구청장이 제1항”을 “제1항”으로,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을 “구청장은 감면을 신청한 자(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에게”로,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를 “따른 감면 관련 사항을 안내”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별지 제1호서식]

지방세 감면 신청서

|             |                          |           |                  |
|-------------|--------------------------|-----------|------------------|
| 접수번호        |                          | 접수일       | 처리기간 5일          |
| 신청인         | 성명(대표자)                  |           | 주민(법인)등록번호       |
|             | 상호(법인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 주소 또는 영업소                |           |                  |
|             | 전자우편주소                   |           | 전화번호<br>(휴대전화번호) |
| 감면대상        | 종류                       |           | 면적(수량)           |
|             | 소재지                      |           |                  |
| 감면세액        | 감면세목                     | 과세연도      | 기분               |
|             | 과세표준액                    | 감면구분      |                  |
|             | 당초 산출세액                  | 감면받으려는 세액 |                  |
| 감면 신청 사유    |                          |           |                  |
| 감면 근거규정     |                          |           |                  |
| 관계 증명 서류    |                          |           |                  |
| 감면 안내<br>방법 | 직접교부[ ] 등기우편[ ] 전자우편 [ ] |           |                  |

「남동구 구세 감면 조례」 제    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세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동구청장 귀하

|      |                  |           |
|------|------------------|-----------|
| 첨부서류 | 감면받을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 수수료<br>없음 |
|------|------------------|-----------|

210mm×297mm(미색모조 80g/㎡)



[별지 제2호서식]

## 남동구

수신자

제 목 지방세 감면 안내

귀하가 년 월 일에 제출한 지방세 감면 신청에 대하여 「남동구 구세 감면 조례」 제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되었음을 안내합니다.

| 연도                    | 기분 | 세목                        | 과세번호 | 당 초<br>산출세액 | 감면액 | 납부할 세액 | 납부기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감면<br>사유              |    |                           |      |             |     |        |      |
| 감면의무<br>위반 시<br>추징 안내 |    | 근거규정                      |      |             |     |        |      |
|                       |    | 의무 준수 사항                  |      |             |     |        |      |
|                       |    | ○<br>※ 기재사항이 부족할 경우 별지 작성 |      |             |     |        |      |

끝.

남동구청장

직인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 - 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 - 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제안이유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 제17771호, 2020.12.29.)에 따른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에 따라 공원기능 보존을 위하여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지정되는 부동산의 재산세 감면 유지를 위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 □ 주요내용

-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조항 삭제(개정전 제2조)
-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재산세 감면 신설(제6조의2)
- 지방세 감면결정 및 감면결과통지 규정 정비(제14조)
  - ‘지방세 감면 결정 통지’를 ‘지방세 감면 안내’로 개정
  - 별지 제1호, 제2호서식 개정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남동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남 동 구 청 장 이 강 호

2021년 4월 30일

남동구 조례 제1788호

## 남동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통하여 지역 상공업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중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사업자등록을 둔 자를 말한다.
2. “금융기관”이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의 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법」의 저축

은행과 「새마을금고법」의 지역금고를 말한다.

3.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구와 협약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4. “신용보증기관”이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을 말한다.
5. “대출금”이란 특례보증에 따라 금융기관으로부터 해당 소상공인이 대출받은 자금을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창업과 경영안정 등을 위하여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4조(특례보증)**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보증재원의 범위에서 특례보증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특례보증 지원대상은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자격 및 금융기관의 대출자격에 결격사유가 없는 소상공인으로 한다.
- ③ 특례보증 한도는 소상공인 1인당 5천만원 이내로 한다.
- ④ 그 밖에 특례보증 지원에 대한 조건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보증재원 등)**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

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특례보증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증재원을 출연할 수 있다.

제6조(지원제한 및 중지) 구청장은 특례보증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원을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1. 동일 사업장에 대하여 중복하여 지원받은 때
2. 거짓자료를 제출하여 지원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
3. 대출금을 목적 외 사용하였을 때
4. 해당 사업장 주소를 구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때
5.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7조(제외대상) 이 조례에서 정한 특례보증 지원 제외대상 업종은 별도로 정하여 구청장이 공고한다.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소상공인 특례보증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인천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한

출연금은 이 조례에 따라 출연한 것으로 본다.

###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제안이유

- 관내 경영상황이 열악한 소상공인에게 채무보증을 통하여 경영을 안정시키고 지역의 고용창출을 촉진시키고자 함.

#### ☐ 주요내용

- 조례 목적 및 정의 (제1조, 제2조)
- 소상공인 지원계획 수립(제3조)
- 특례보증 및 보증재원(제4조, 제5조)
- 지원 제외 대상 및 지원의 중지(제6조, 제7조)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남동구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남 동 구 청 장 이 강 호

2021년 4월 30일

남동구 조례 제1789호

## 남동구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영역에서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과 여성경제인의 지위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성기업”이란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 기업의 본점이나 공장 또는 연구소가 소재하고 있는 기업으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여성경제인”이란 구 여성기업의 임원으로 그 기업의 최고 의사 결정에 참

여하는 여성을 말한다.

3. “여성경제인단체”란 구 여성기업 또는 여성경제인이 결성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는 구 여성기업에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에 있는 기업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제4조(지원활동 등)**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기업의 활동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여성 친화적 업종에 해당하는 분야
2. 여성전문인력의 경제활동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분야
3. 신제품의 개발이나 신기술 도입 등 여성기업의 육성분야
4. 여성 고용창출을 위한 신산업 발굴 분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그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2. 휴업 또는 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금융거래 상황이 불량하여 규제중인 기업

제5조(자금지원 우대) 구청장은 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할 경우, 여성기업의 활동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기업을 우대하여야 한다.

제6조(구매활동 촉진 등) 구청장은 여성기업의 생산제품에 대한 구매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우대할 수 있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여성기업이 직접 생산하는 제품, 제공하는 용역 및 수행하는 공사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구청장이 수립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 설정 및 구매 시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

제7조(기술력향상 및 판로개척 등) 구청장은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우대할 수 있다.

1.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신제품, 신기술 도입 및 지적재산권(특허, 실용신안),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
2. 여성기업 생산제품의 국내·외 전시회 참가 등 판로개척을 위한 지원

제8조(여성기업과 여성경제인 명부 작성) ① 구청장은 여성기업의 활동현황 및

실태파악을 위하여 여성기업과 여성경제인 명부를 작성하여 여성기업 지원 시책의 기본 자료로 활용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여성경제인 또는 여성경제인단체가 구청장이 정하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제1항에 따른 명부등재를 요구할 경우 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9조(여성경제인단체 활동지원)** 구청장은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고, 여성기업의 경영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구 관내에 있는 여성경제인단체의 활동을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유공자 표창)** 구청장은 여성기업 활동 촉진 및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에게 「남동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제안이유

- 관내 여성기업 활동과 여성창업을 활성화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여성경제인의 지위향상을 꾀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 □ 주요내용

- 조례 목적 및 정의 (제1조, 제2조)
- 지원 적용대상(제3조)
- 지원활동 및 지원내용(제4조~제7조)
- 여성경제인 명부작성 및 단체 지원 등(제8조, 제9조)
- 유공자 표창(제10조)

##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남동구 장애인 보조견 생활  
이용편의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남 동 구 청 장 이 강 호

2021년 4월 30일

남동구 조례 제1790호

## 남동구 장애인 보조견 생활이용편의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생활이용편의를 위한 보조견의 지원에 관  
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2. “보조견”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장  
애인 보조견표지를 발급받은 보조견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들의 생활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보조건의 출입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40조제3항에 명시한 대중교통, 공공장소,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보조건이 출입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활동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사업)** 구청장은 보조건의 출입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보조건 출입보장을 위한 구민 홍보사업
2. ‘보조건 출입가능’ 픽토그램의 보급
3. 대중교통수단, 공공장소, 숙박시설, 식품접객업소 등을 대상으로 한 보조건 출입보장 교육 및 홍보
4. 법 제40조 ‘장애인 보조건의 지원 등’ 및 제90조 ‘과태료’에 대한 교육
5. 그 밖에 보조건 출입보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기관 등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보조건 출입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단체 등에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보조는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6조(협력의무)** 구청장은 보조건의 출입을 보장하여 장애인의 생활이용편의가 증진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제안이유

-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생활이용편의를 위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삶의 질 향상과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함.

### □ 주요내용

- 목적에 관한 사항 (제1조)
- 정의에 관한 사항 (제2조)
-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제3조)
-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제4조)
- 기관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제5조)
- 협력의무에 관한 사항 (제6조)

##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남동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남 동 구 청 장 이 강 호

2021년 4월 30일

남동구 조례 제1791호

## 남동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청소년”이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죄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아동·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성범죄 예방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학교 및 아동·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을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구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
4.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을 위한 성 문화 관련 교육에 관한

## 사항

5. 그 밖에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교육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아동·청소년 보호에 관한 기본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동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남동구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남동구청소년육성위원회에서 대신 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교육청, 경찰서, 아동·청소년 관련 단체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관계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과 관련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른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제안이유

-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과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건전한 사회와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 □ 주요내용

- 목적에 관한 사항 (제1조)
- 정의에 관한 사항 (제2조)
-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제3조)
-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제4조)
-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제5조)
-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제6조)
-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제7조)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남동구 아동위원 및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남 동 구 청 장 이 강 호

2021년 4월 30일

남동구 조례 제1792호

## 남동구 아동위원 및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

남동구 아동위원 및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앞에 “제1장 총 칙”을 삭제한다.

제1조 중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제14조”를 “「아동복지법」 제12조,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로,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3조 앞에 “제2장 아동위원”을 삭제한다.

제5조 본문 중 “2회 이내에 한하여”를 “두 차례만”으로 한다.

제7조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8조 앞에 “제3장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삭제한다.

제8조의 제목 “(구성)”을 “(위원회의 구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및 부위원장 각”을 “1명과 부위원장”으로, “10명”을 “15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아동복지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심의사항에 따라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를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한다.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당연직위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과장”을 “담당부서의 장”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을 “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4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를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로, “학식”을 “관한 학식”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유아교육법」 제22조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나. 지역교육지원청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3.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복지 관련 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5.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 또는 「지방공

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아동복지학, 사회복지학 또는 심리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소위원회) ① 구청장은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의2를 따른다.

제9조제1호 중 “아동복지법”을 “「아동복지법」”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본문 중 “위원의”를 “위촉직 위원”으로, “2회 이내에 한하여”를 “두 차례만”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3조, 제15조 및 제16조를 각각 삭제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위원의 위촉 및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한 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임기는 종전의 위촉일부터 기산한다.

##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제안이유

- 「아동복지법」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아동학대 발생 예방 및 보호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 □ 주요내용

-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내용 개정 : (제8조제1항~제3항)
  -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인원 변경(기존 10명 이내 -> 15명 이내)
  - 아동복지심의 위촉직 위원 전문 분야 추가 (의사, 경찰 등)
-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소위원회 조항 신설 : (제8조의2)
-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 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

##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남동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남 동 구 청 장 이 강 호

2021년 4월 30일

남동구 조례 제1793호

## 남동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동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3조제1항 중 “남동구청장은”을 “남동구청장”으로, “한다)”를 “한다)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 중 “아동보호전문기관”을 각각 “남동구”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위원회는 「남동구 아동위원 및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조례」”를 “「남동구 아동위원 및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로, “위원회의”를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로 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제안이유

-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에 따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 사업 추진을 위한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궁극적으로 아동의 보호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 주요내용

- 아동학대 신고에 관한 내용 개정 : (제4조제1항~제2항)
  - 아동학대 신고 접수 민간에서 지자체로 이관  
(아동학대 발견 시 남동구 또는 수사기관이 신고 접수 수행)
-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 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남동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남 동 구 청 장 이 강 호

2021년 4월 30일

남동구 조례 제1794호

## 남동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가 연령에 맞는 건강한 성장을 이루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3. “영유아 발달”이란 영유아가 연령별 발달 특성에 따라 건강하게 성장을 하는 것을 말한다.

4. “발달 검사”란 영유아의 해당 연령에 따른 신체, 인지, 의사소통, 심리·사회·정서, 적응력, 자조기술 등을 검사하여 수준을 측정하고, 지연 정도를 수치화하여 발달 지연에 대한 치료 계획을 세우기 위한 검사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남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영유아 및 보호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이 통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남동구 영유아 발달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유아 발달 지원 정책 방향과 추진 목표
2.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재원조달 및 예산지원에 대한 사항
3.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
4.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관계 기관 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영유아 기본 발달 검사 실시
2. 영유아 기본 발달 검사결과 발달 지연의 위험성이 상당히 의심되는 영유아에 대한 추가 발달 검사
3. 보호자 심리 지원 서비스
4.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 확대를 위한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영유아에 대한 지원은 보호자의 신청에 의한다.

**제7조(사업의 위탁)** 구청장은 제6조의 사업을 영유아 발달의 전문성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8조(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구청장은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영유아 발달과 관련된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정보·기술의 교류 및 홍보활동 등을 상호 협력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제안이유

- 관내 영유아가 연령에 맞는 건강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 주요내용

- 목적에 관한 사항 (제1조)
- 정의에 관한 사항 (제2조)
-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 (제3조)
-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제4조)
-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제5조)
-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제6조)
- 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 (제7조)
-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 등에 관한 사항 (제8조)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남동구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남 동 구 청 장 이 강 호

2021년 4월 30일

남동구 조례 제1795호

## 남동구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 내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이스팩 배출을 억제하고 자원을 순환적으로 이용함으로써 환경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이스팩”이란 비닐봉지 등의 포장재에 물, 고흡수성 수지(SAP,

Super absorbent polymer)등의 충전물을 넣은 팩 형태의 보냉재를 말한다.

2.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3. “재사용”이란 재활용 가능 자원을 그대로 또는 고쳐서 다시 쓰거나 생산활동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재생이용”이란 재활용 가능 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료물질(原料物質)로 다시 사용하거나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5. “친환경 자원 순환형 아이스팩”이란 재활용 또는 생분해되는 포장재와 충전물을 사용한 보냉재를 말한다.
6. “그린뉴딜”이란 통상 환경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지속 가능한 발전 정책을 뜻하며, 이는 기존 경제·산업 시스템에 대한 대변혁으로, 저탄소 경제구조로 전환하면서 기후위기와 환경문제에 대응하는 것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이외의 용어 정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제3조(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기본원칙)** 남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그린뉴딜 구현을 목적으로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을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생태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는 미세 플라스틱 오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범지구적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야 한다.
2. 아이스팩 배출 저감을 통해 궁극적으로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친환경 자원 순환형 경제·사회 구조로 전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아이스팩 수거 및 재활용·재사용·재생사용 활성화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아이스팩 배출 저감이 이뤄지도록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 구청장은 아이스팩 수거 및 재활용·재사용·재생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주민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구민의 책무)** 남동구민은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아이스팩의 사용이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구가 시행하는 활성화 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제6조(활성화 시책의 수립 등)** 활성화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활성화 시책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
2. 활성화 시책의 추진계획 및 시행 방법
3. 주민의식증진 관련 교육·홍보 및 주민참여방안
4. 활성화 시책에 필요한 예산 산정 및 재원 조달계획
5. 그 밖에 활성화 시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제7조(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활성화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해 관내 아이스팩 배출 및 수거·재활용·재사용·재생이용 등의 현황에 대해 실태조사와 연구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와 연구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사업 지원 등)** ① 구청장은 활성화 시책의 시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활성화 관련 시설 설치 및 운영, 일자리 창출, 현물 보상 사업
2. 아이스팩 수거·재활용·재사용·재생이용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단체나 개인 등의 발굴·육성·지원 사업
3. 친환경 자원 순환형 아이스팩을 생산 및 판매, 보급하는 법인·단체나 개인 등의 발굴·육성·지원 사업
4. 구와 구 산하 공공기관, 주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그린뉴딜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
5. 그 밖에 활성화 시책의 시행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9조(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제7조제2항 및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제10조(국내외 기관 등과의 협력) 구청장은 범지구적 이슈로 다뤄지는 아이스팩 배출 저감을 위하여 국내외 정부 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및 관계 기관 등과 교류 및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구청장은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에 이바지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등을 선정하여 「남동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제안이유

- 아이스팩은 미세플라스틱의 일종인 고흡수성 폴리머 사용으로 열에도 타지 않고 자연분해 기간이 500년 이상 소요되므로 재활용을 통해 아이스팩 쓰레기를 줄이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활성화로 환경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제1조, 제2조)
-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제3조)
- 책무에 관한 사항(제4조, 제5조)
- 활성화 시책의 수립·시행 및 지원에 관한 사항(제6조~제8조)
-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제9조)
- 국내외 기관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제10조)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남동구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남 동 구 청 장 이 강 호

2021년 4월 30일

남동구 조례 제1796호

## 남동구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음·진동관리법」 및 「대기환경보전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장 및 공사장으로부터 발생하는 생활소음·진동 및 먼지를 사업자의 자율적인 저감 실천과 지도 점검을 통하여 적정하게 관리함으로써 모든 주민이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소음·진동”이란 「소음·진동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에 따른 소음·진동을 말한다.

2. “비산먼지”란 사업장과 공사장 등에서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남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1. 생활소음·진동,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의 배출 억제시설 설치 및 적정 운영 여부의 지도 점검에 관한 사항
2.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의 방지 활동에 관한 사항
4. 생활소음·진동과 비산먼지 방지를 위한 주민자율참여 실천운동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제4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사업 활동으로 발생하는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의 저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사업자는 남동구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시책에 참여 하고 협력할 것
2. 사업자는 사업공정에 따른 전 과정에서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하여 모든 규정을 준수하며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억제를 위하여 설치기준에 적합한 시설 개선에 적극 노력할 것

3. 사업자는 주민의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피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민원 해소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노력할 것

4. 비산먼지 발생 신고사업장은 비산먼지 억제를 위한 방지대책을 우선적으로 조치하도록 노력할 것

② 제6조제2항에 따른 소음측정기기를 설치한 사업장에서는 소음도 표시를 의무화하여 현수막 등 홍보매체를 통해 주민에게 적극 홍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생활소음·진동의 측정)** ① 구청장은 주택밀집지역, 학교인접지역 등에 위치한 공사장에 대해서는 생활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의 사전예방과 행정지도를 위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지점에서 수시로 생활소음·진동 정도를 측정할 수 있다.

② 생활소음·진동의 측정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

**제6조(소음측정기기의 설치 권고)** ① 구청장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2조의2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는 자에게 소음측정기기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음측정기기 설치 권고 대상은 건축 연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의 공사장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소음측정기기 설치 권고 대상 공사장의 사업자에게 소음측정기기의 설치기간 및 위치, 소음측정기기명, 소음측정 방법 등을 기재한 소음측정기기 설치·운영계획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공사장 비산먼지 발생 억제)** ① 건축물 해체·축조공사, 토목공사, 조경공사, 토공사 및 정지공사 등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 최소 규모의 10배 이상 공사장의 사업자는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공사장 내 차량통행 도로에 대한 우선 포장
2. 공사장 및 인근 도로의 청결 유지를 위한 청소 실시
3. 공사장 출입차량의 세륜·세차 이행 여부 확인과 도로에 토사 유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비산먼지 관리 전담요원의 배치

② 제1항에 따른 공사장에서 도시가스, 상·하수도 등 도로굴착 공사를 하는 사업자는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관련된 공사를 가급적 동시에 하고, 신속하게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지도·점검)** 구청장은 구민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도·점검할 수 있다.

1. 사업자가 그 사업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에 대하여 저감대책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
2. 아침 및 저녁 시간대에 특정 기계나 장비 사용으로 지나친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를 발생하는 행위
3. 주택밀집지역, 학교인접지역에서 이동하며 확성기를 사용하여 생활소음을 발생하는 행위

제9조(사업자의 자율참여) 구청장은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배출하는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에 대하여 사업자가 관리 목표를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협약 체결 등을 권고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제안이유

- 사업장 및 공사장으로부터 발생하는 생활소음·진동 및 먼지를 사업자의 자율적인 저감 실천과 지도 단속을 통하여 적정하게 관리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도모하고자 함.

####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 (제1조, 제2조)
- 구청장 및 사업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 (제3조, 제4조)
- 생활소음·진동의 측정에 관한 사항 (제5조)
- 소음측정기기의 설치 권고에 관한 사항 (제6조)
- 공사장 비산먼지 발생 억제에 관한 사항 (제7조)
- 지도·점검 및 사업자의 자율참여에 관한 사항(제8조, 제9조)



##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남동구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남 동 구 청 장 이 강 호

2021년 4월 30일

남동구 조례 제1797호

## 남동구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동구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앞에 “제1장 총 칙”을 삭제한다.

제1조 중 “「지하수법 시행령」 「지하수법 시행규칙」”을 “,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7조(제13조”를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3조”로 한다.

제3조 앞에 “제2장 지하수의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를 삭제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규칙”을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시기는 「규칙」 제17조”를 “시기는 시행규칙

제17조”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규칙」 제17조제2항”을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으로 한다.

제6조 앞에 “제3장 지하수관리 위원회 설치·운영”을 삭제한다.

제7조제2항제4호 및 제6호 중 “임·직원”을 각각 “임직원”으로 한다.

제11조 앞에 “제4장 특별회계 설치 및 재원의 관리”를 삭제한다.

제12조제6호 중 “지하수법”을 “법”으로 한다.

제1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30조의2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제15조 중 “준용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1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지하수이용부담금 사용금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과하지 않고, 10원 미만은 절사한다.

제17조제1항 중 “지방세법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전산용2)”를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지 제13호서식”으로, “납부고지서”를 각각 “고지서”로 한다.

제18조 중 “5”를 “3”으로 한다.

제20조 앞에 “제5장 별 칙”을 삭제한다.

제27조 앞에 “제6장 보 칙”을 삭제한다.

제27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제안이유

- 법문에 나타난 용어와 내용 등을 전체적으로 현실에 맞게 정비
- 지하수이용부담금 체납 가산금 징수 완화로 구민과 중소기업의 금전적 부담을 줄이고자 함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

### □ 주요내용

- 지하수이용부담금 산정방법 정비 : (제16조)
- 지하수이용부담금 체납 가산금 완화 : (제18조)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 조 례

남동구의회의에서 의결된 남동구 빈집 정비 지원 및 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남 동 구 청 장 이 강 호

2021년 4월 30일

남동구 조례 제1798호

## 남동구 빈집 정비 지원 및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 붕괴, 화재 발생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빈집 정비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편의 증진과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다만, 미분양주택 등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

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빈집 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빈집을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3. “빈집 환경정비”란 빈집 내에 무단투기된 환경오염 및 악취 등을 유발하는 각종 생활폐기물 등을 정비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빈집 정비 및 빈집 환경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빈집 정비 및 빈집 환경정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빈집 정비 및 빈집 환경정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 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빈집 정비 및 빈집 환경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
2.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주민쉼터, 문화여가시설, 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공간, 공용주차장 등을 말한다)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

서를 제출한 빈집

3. 빈집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및 범죄·화재예방 등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
4. 그 밖에 빈집 정비 및 빈집 환경정비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정비 대상 등) 빈집 정비 및 빈집 환경정비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주변 환경이나 미관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경우
3. 공중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실태조사) 구청장은 빈집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안전조치 등)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정비 대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1. 빈집에서 발생하는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전기·수도·도시가스 등의 공급사업자에게 관계법령에 따라 공급중지 또는 폐쇄조치 요청
2. 빈집의 관리를 위하여 그 빈집 소유자에게 안전사고 등을 방지코자 출

## 입구 등 폐쇄 요청

3. 빈집에서 발생하는 무단투기 생활쓰레기 부패로 인한 악취 및 전염병 예방 등을 위하여 방역 등 주기적 실시
4. 빈집 밀집지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과 소방서장에 게 방범순찰 강화와 중점관리 요청
5. 빈집 환경정비를 명한 경우 그 빈집의 소유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빈집 환경정비를 실시하여야 한다.

## 부 칙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지원된 빈집 정비 또는 빈집 환경정비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제안이유

- 남동구 내 방치된 빈집의 정비와 효율적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통한 주민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 (제1조, 제2조)
-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제3조)
-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 (제4조)
- 지원 대상 및 정비 대상 등에 관한 사항 (제5조, 제6조)
- 실태조사 및 안전조치 등에 관한 사항 (제7조, 제8조)



## 조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남동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남 동 구 청 장 이 강 호

2021년 4월 30일

남동구 조례 제1799호

## 남동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갑작스런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최초의 목격자에 의한 신속한 심폐소생술 시행이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으로서 우리 구 거주 고위험군 가족 등 교육이 필요한 구민을 대상으로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생명을 구하고 구민의 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심정지 환자”란 갑자기 심장이 멈추고 호흡이 정지되어 신속한 심폐소생술을 받지 못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

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심폐소생술”이란 심폐기능이 갑자기 멈춘 심정지 환자에게 인공적인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을 시행하는 응급처치를 말한다.
3. “고위험군 환자”란 심정지의 위험성이 높은 심장병,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뇌졸중 등을 가진 만성질환자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심폐소생술에 대한 교육·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고위험군 환자나 가족 등 심폐소생 교육이 필요한 남동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심정지 환자에 대한 초기 생존율 향상 등 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년 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이하 “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심폐소생술 교육의 기본 방향
2. 심폐소생술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고위험군 환자 가족의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해당 연도의 교육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교육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 ① 구청장은 심폐소생술 교육을 원하는 구민을 대상으로 응급 환자의 생명과 구민의 건강 보호를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교육을 우선적으로 실시 할 수 있다.

1. 관내 고위험군 환자 가족
2. 자원봉사자, 복지관 및 생활체육시설 운영자, 보육시설 운영자, 학생 및 교직원
3.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
4.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 및 통·반장
5. 남동구 소속 공무원
6. 그 밖에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전문교육기관이 교육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지원 등)** ① 구청장은 교육을 실시하는 단체나 기관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및 지원절차 등은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교육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한 기관·단체 및 개인에게 「남동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7조(홍보)** ① 구청장은 구민들에 대한 심폐소생술 교육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신문, 방송, 인터넷 등 여러 매체를 활용하여 적극 홍보하여

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심폐소생술 교육, 캠페인 등을 실시할 경우 홍보물 및 홍보물품 등을 제작·배포할 수 있다.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교육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제안이유

- 일상에 갑작스런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최초 목격자의 신속한 심폐소생술 이행으로 환자의 생명을 구하고, 심폐소생술의 저변 확대를 위한 주민대상 교육 시행의 근간을 마련하여 응급 환자의 생명과 구민건강을 도모 하고자 함.

### □ 주요내용

-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 (제1조, 제2조)
-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제3조)
- 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제4조)
- 교육에 관한 사항 (제5조)
-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제6조)
- 홍보에 관한 사항 (제7조)
- 비밀 준수의 의무에 관한 사항 (제8조)

##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남동구 음식문화거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남 동 구 청 장 이 강 호

2021년 4월 30일

남동구 조례 제1800호

## 남동구 음식문화거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점이 밀집되어 있는 거리를 음식문화거리로 지정하여 건전한 음식문화 활성화와 지역 외식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인”이란 남동구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상인단체”란 상권이 형성된 일정 지역에서 상인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율적으로 설립한 조직으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음식문화거리”란 일정 지역 음식점이 밀집되어 있는 거리로써, 건전하고 위생적인 음식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거리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음식문화거리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상인단체의 책무)** 상인단체는 음식문화거리 조성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남동구 시책에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 ① 구청장은 음식문화거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음식문화거리에 관한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2. 사업의 목표 및 추진계획
3. 관련 자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음식문화거리 지원,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6조(음식문화거리 지정)** ① 구청장은 거리환경 및 시설, 거리의 역사성,

시민의 이용도,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음식문화거리를 지정한다.

② 구청장은 음식문화거리를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내용을 구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지정기준 등)** ① 음식문화거리는 일정 지역에 소재한 음식점(「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을 말한다)이 30개 이상 집단화(아파트 상가는 제외한다)를 이루어야 하며, 제2조제2호에 따른 상인단체가 구성되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 충족여부 및 사실 확인을 위하여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조사 등을 실시토록 하여야 한다.

**제8조(지정신청 및 취소)** ① 상인단체 대표자는 제6조에 따른 음식문화거리 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문화거리 지정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동의서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와 함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상인단체 등록 서류
2. 해당 예정거리의 상인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
3. 상인단체의 명부 및 회칙 또는 정관
4. 음식점 위치 등이 표시된 음식문화거리 예정 위치도
5. 음식문화거리 활성화 계획서

② 구청장은 지정된 음식문화거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음식문화거리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
2. 심각한 위생, 품질 등 관리 소홀로 인하여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경우
3. 구청장이 음식문화거리의 지정을 취소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음식문화거리 지정을 받은 경우

**제9조(사업의 지원)** ① 구청장은 지정된 음식문화거리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사업
2. 공동시설, 고객 편의시설의 설치 등 고객 접근성 향상 및 환경개선사업
3. 축제 및 음식문화거리 활성화 등을 위한 홍보사업
4. 종합적인 지원계획에 따른 평가에서 선정된 업소의 종합컨설팅
5. 상인 대상 교육사업
6. 그 밖에 음식문화거리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할 때에는 상인단체의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예산의 규모, 상인의 자부담 조달 능력 등을 고려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심의)** ① 음식문화거리 지정 및 지원사업 등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남동구 위생관리 심의 위원회에서 심의한다.

② 제1항의 심의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음식문화거리 지정 및 취소
2. 음식문화거리 지원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음식문화거리 지정 심의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사업비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를 따른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음식문화거리 지정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에 특색음식거리로 지정된 구월동 문예길음식문화1번가, 운연동추어마을, 소래포구신도로 횃집거리, 구월동 로데오음식문화거리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음식문화거리로 본다.

##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제안이유

- 음식점이 밀집되어 있는 거리를 음식문화거리로 지정함에 있어 음식문화거리 지정 및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남동구만의 특색 있는 음식문화거리를 육성하고 음식문화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 주요내용

- 남동구 음식문화거리 지정 및 지원 목적, 정의 (제1조, 제2조)
- 남동구청장 및 상인단체 책무 (제3조, 제4조)
- 음식문화거리 지정(제6조)
- 음식문화거리 지정기준 등(제7조)
- 음식문화거리 지정신청 및 취소(제8조)
- 음식문화거리 사업의 지원(제9조)
- 심의(제10조)

##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남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남 동 구 청 장 이 강 호

2021년 4월 30일

남동구 조례 제1801호

## 남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의회 의원이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기소되거나  
피소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남동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다  
음 각 호의 의정활동에 한하여 적용한다.

1. 회기 중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2. 본회의 또는 위원회 등의 의결이나 남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라 공무활동을 하는 경우
3. 「지방자치법」 제61조에 따라 폐회 중 개최된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이하 “상임위원회 등”이라 한다)에서 의정활동(기관방문 등

현장활동을 포함한다)을 수행하는 경우

4. 그 밖에 의정활동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3조(소송비용 지원)** ① 의원이 제2조에 해당하는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거나 형사소송의 피고인이 된 경우에 제5조에 따른 남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의원이 소송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송비용 지원 기준 등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④ 소송비용 지원 신청은 의장에게 한다.

**제4조(소송비용 환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원은 지원받은 비용 전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1. 민사소송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2. 형사소송에서 유죄판결(선고유예, 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이 확정된 경우

② 소송비용 환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소송비용 환수는 의장이 의원에게 한다.

**제5조(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의원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의회에 남동구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소송비용 지원 대상인 의정활동 해당 여부 심의

2. 소송비용 지원 사항에 대한 심의

3. 소송비용 환수 사항에 대한 심의

4. 그 밖에 소송비용 지원 및 환수 등과 관련한 의장 자문 요청사항에 대한 심의

② 위원회는 소송 종료 후 자동 해산된다.

**제6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1. 의원 2명(소송비용 신청 의원 제외)

2. 의회 법률 또는 입법 고문

3. 소송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

4. 그 밖에 법률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회 사무국 의사담당이 된다.

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7조(소송결과제출)** 소송비용을 지급받은 의원은 각 심급이 끝날 때 마다 별지 제2호서식의 소송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비밀유지의무)** 위원회 위원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가 대외적으로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소송비용의 지급기준 및 구비서류**(제3조제3항 관련)

| 구 분                   | 지 급 기 준                                                 |            | 승 소 사 례 금                                                                                                                    |
|-----------------------|---------------------------------------------------------|------------|------------------------------------------------------------------------------------------------------------------------------|
|                       | 소송목적의 값(소가)                                             | 착 수 금      |                                                                                                                              |
| 신청사건                  | 변론이 없는 경우                                               | 200,000원   | 없 음                                                                                                                          |
|                       | 변론이 있는 경우                                               | 400,000원   |                                                                                                                              |
| 본안사건<br>(민사·행정<br>소송) | 무소가사건 및 2천만원 미만                                         | 800,000원   | 1. 전부 승소시 :<br>착수금의 150%<br>2. 50%이상 승소<br>시 : 전부 승소시<br>지급금액에 승소<br>율을 곱한 금액<br>3. 화해, 인락, 소<br>취하 등의 경우 :<br>착수금의 2분의<br>1 |
|                       | 2천만원 이상 4천만원 미만                                         | 1,000,000원 |                                                                                                                              |
|                       | 4천만원 이상 7천만원 미만                                         | 1,500,000원 |                                                                                                                              |
|                       | 7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2,000,000원 |                                                                                                                              |
|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                                           | 2,500,000원 |                                                                                                                              |
|                       | 2억원 이상 3억원 미만                                           | 3,000,000원 |                                                                                                                              |
|                       | 3억원 이상 4억원 미만                                           | 3,500,000원 |                                                                                                                              |
|                       | 4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4,000,000원 |                                                                                                                              |
|                       | 5억원 이상                                                  | 4,500,000원 |                                                                                                                              |
| 상 소 심                 | 본안사건 착수금 지급 금액                                          |            |                                                                                                                              |
| 환송사건                  | 본안사건 착수금의 1/2이내                                         |            |                                                                                                                              |
| 형사사건                  | 개인단독사건                                                  | 2,000,000원 | 없 음                                                                                                                          |
|                       | 다수관련사건                                                  | 3,000,000원 |                                                                                                                              |
|                       | 구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사건                                        | 5,000,000원 |                                                                                                                              |
| 기 타<br>소송비용           | 1. 인 지 대<br>2. 송 달 료<br>3. 감정·검증료<br>4. 증인여비<br>5. 기타비용 | 실 비        |                                                                                                                              |

## [구비서류]

1. 착수금 : 신청서, 소가증명원
2. 승소사례금 : 신청서, 확정증명원, 소송비용 확정결정 신청 접수증
3. 그 밖의 비용 : 신청서, 해당서류 등

## [별표 2]

### 소송비용 등의 지원 및 환수의 기준과 절차

(제3조제3항 및 제4조제2항 관련)

1. 소가 5억원 이상은 5억원으로 본다.
2. 착수금은 심급별로 지급하고, 승소사례금은 심급별로 지급하지 아니하며 변론 을 거친 소송사건이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다만, 해당 사건의 이전 심급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선임변호사가 구의회 또는 당사자의 귀책사유로 교체된 경우에는 사건수행의 정도 및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분할 지급한다.
3. 소가는 청구취지가 확장될 경우 확장된 소가를 기준으로 한다.
4. 착수금, 승소사례금을 지급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5. 민사소송의 피고가 된 경우 별표 1의 소송비용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원하되, 상소심은 원심에서 승소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 다만, 상소심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원심에서 패소하였다는 이유로 지원하지 않은 금액은 각 심급별 소송비용의 범위에서 의원이 실제 지출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6. 의원이 소송비용 등을 지원 받은 후, 패소한 당사자 또는 국가로부터 다음 구분에 따른 비용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비용 중 변호사보수를 이유로 받은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 1) 「민사소송법」에 따른 소송비용
  - 2) 「형사소송법」에 따른 무죄판결 보상비용
7. 의원이 받은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의 이유가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환수할 소송비용 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의원이 환수할 소송비용 등을 감면받으려는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 등을 통해 남동구의



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

|       |                     |       |      |       |      |  |  |
|-------|---------------------|-------|------|-------|------|--|--|
| 신청의원  | 성명                  |       |      | 생년월일  |      |  |  |
|       | 주소                  |       |      |       |      |  |  |
|       | 전화번호                | (휴대폰) |      | (사무실) |      |  |  |
|       | 해당<br>상임(특별)위원<br>회 |       |      |       |      |  |  |
| 소송 정보 | 민사소송                | 사건명   |      |       |      |  |  |
|       |                     | 법원    |      |       | 사건번호 |  |  |
|       |                     | 당사자   | (원고) |       | (피고) |  |  |
|       | 형사소송                | 사건번호  |      |       |      |  |  |
|       |                     | 공소청   |      |       | 피고인  |  |  |
|       |                     | 죄명    |      |       |      |  |  |

[첨부서류] 1. 소장 부분 1부(민사소송의 경우) 또는 공소장 부분 1부(형사소송의 경우)  
2. 변호사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남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남동구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소 송 결 과 보 고

| 사 건 명 | 법원 호 사건                              |     |       |       |  |
|-------|--------------------------------------|-----|-------|-------|--|
| 당 사 자 | 민사·행정<br>소송                          | 원 고 |       | 소송수행자 |  |
|       |                                      | 피 고 |       | 소송수행자 |  |
|       | 형사소송                                 | 검 사 |       | -     |  |
|       |                                      | 피고인 |       | 변호인   |  |
| 판결결과  |                                      |     |       |       |  |
| 판결일자  |                                      |     | 소송물가액 |       |  |
| 판결이유  |                                      |     |       |       |  |
| 대 책   |                                      |     |       |       |  |
| 첨 부   | - 판결문사본<br>- 판결확정증명원·소송비용 회수상황(확정 후) |     |       |       |  |

※ 해당사항이 없으면 공란으로 둔다.

##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제안이유

- 남동구의회 의원이 의정활동을 수행하다가 기소되거나 피소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대표자로서 의정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도록 마련하고자 함.

### □ 주요내용

- 조례 목적 및 적용범위 규정(제1조, 제2조)
- 소송비용 지원 근거 및 환수 등에 대한 사항(제3조, 제4조)
-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제5조, 제6조)
- 소송결과 제출 및 비밀유지 사항(제7조, 제8조)

##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1-860호

## 공무원 노동조합 해직공무원 및 징계공무원 심의, 결정 신청 안내 공고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따라 공무원 노동조합 해직공무원 및 징계공무원 심의·결정 신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30일

### 남 동 구 청 장

1. 신청기간 : 2021년 4월 13일 ~ 2021년 7월 13일(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2. 신청대상

- 2002년 3월 23일부터 2018년 3월 25일까지의 기간 동안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활동으로 해직(파면·해임·당연퇴직·직권면직 또는 계약해지) 또는 징계(강등·정직·감봉 또는 견책 등) 처분을 받은 공무원(「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무원)

3. 신청자격 : 본인 또는 해직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그의 유족(유족은 아래 순서에 따라 신청인이 됨)

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유족급여를 받는 사람

나. 가.에 따른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 제31조에 따른 우선순위에 있는 유족으로 하되,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의 유족대표자 선정서에 따라 정한 유족대표자

4. 신청시 제출서류 :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해직공무원등 결정 신청서에 아래의 서류 첨부

가. 공무원 경력증명서 1부

나. 해직·징계처분과 관련된 처분사유 설명서, 의결서 및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의 결정

또는 판결 등 관련 자료

다.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급여(해직공무원이 사망하여 그 유족이 퇴직유족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퇴직유족급여)를 수령하고 있거나 수령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연금증서 등 자료

라.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자료(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마.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유족대표자 선정서(시행령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유족 대표자가 신청하는 경우)

바. 그 밖에 해직공무원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5. 신청서 접수기관(방문 또는 우편) : 남동구의 해직공무원등의복지및명예회복심의위원회**

\* (주소 및 연락처)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만수동) 남동구청 5층 총무과 / 032)453-2192

- 해직 또는 징계처분 당시 소속기관에 신청해야 하며, 소속하였던 기관이 폐지·변경된 경우에는 그 권한 또는 기능을 승계받은 기관

**6. 심의·결정 절차 :**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심의·결정하며, 신청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결정하지만 결정기간 연장, 재심의 등에 따라 지연될 수 있습니다.

**7. 해외체류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2021년 7월 13일 이내에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2021년 9월 30일까지 신청서 접수기관에 시행령 별지 제3호서식의 사유서를 제출하면 위원회 결정을 거쳐 2021년 10월 13일까지 신청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위원회에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신청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2021년 7월 13일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동구청 총무과(☎453-219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식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검색하시면 별지 서식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1-931호

**음실천 소하천정비종합계획(변경)(안)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 등의 의견 수렴결과 및 반영 여부 공고**

음실천 소하천정비종합계획(변경)(안)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규정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2021년 04월 29일

**남 동 구 청 장**

1. 계획의 개요

- 가. 계 획 명 : 음실천 소하천정비종합계획(변경)
- 나. 위 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일원
- 다. 시 행 자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 라. 계획규모 : 소하천 1개소, 총 연장 1.28km
- 마. 사업내용 : 음실천 소하천정비종합계획(변경)

2. 공개개요

- 가. 공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2021년 04월 29일 ~ 05월 12일)
- 나. 공개장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홈페이지,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 다. 공개내용 : 붙임 참고
  - 주민 의견수렴 공고사항
  - 주민설명회 개최 사항
  - 주민 등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 내용 등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방재하수과 치수관리팀(☎ 032-453-841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음 실 천 소 하 천 정 비 종 합 계 획 ( 변 경 )  
전 략 환 경 영 향 평 가  
주 민 의 건 수 량 및 반 영 결 과

---

---

2021. 04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 □ 주민의견수렴 결과

### 가. 주민공람

-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 공람장소

| 구 분  | 장 소                 |
|------|---------------------|
| 남동구청 | 방재하수과, 남촌도림동 행정복지센터 |

- 공람기간 : 2021년 01월 19일 ~ 02월 17일(휴일제외 20일간)
- 공람 및 주민설명회 신문공고
  - 공 고 일 : 2021년 01월 19일(화)
  - 공고신문 : 일간신문(기호일보) 및 지역신문(신아일보) 각각 1회 공고

| 기호일보(일간신문) | 경기매일신문(지역신문) |
|------------|--------------|
|------------|--------------|

#### 기호일보

2021년 1월 19일 화요일 004면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21-141호

### 음식전 소하천정비종합계획(안)(변경)·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음식전 소하천정비종합계획(변경) 수립에 대하여 「소하천정비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소하천 자정(변경) 및 자정도면(소하천구역, 소하천영역)고시에 대하여 「소하천정비법」 제3조, 제3조의3 및 제4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 규정에 의거 주민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1. 1. 19.

#### 남 동 구 청 장

| 1. 사업개요 | 항명  | 종 류         | 사 업 구 간        | 종 류 | 하천연장(km) |
|---------|-----|-------------|----------------|-----|----------|
| 음식전     | 소하천 | 남동구 문연동 268 | 남동구 문연동 459-35 |     | 1.28     |

2. 공람기간 및 장소 등

○ 공람기간 : 2021. 01. 19. ~ 2. 17.

| 구 분       | 공람장소                    |
|-----------|-------------------------|
| 인천광역시 남동구 | 남동구청 방재하수과, 장수서당동행정복지센터 |

3. 주민설명회 개최일시 및 장소

| 주민 설명회 | 장 소         | 개 회 일 시                 | 비 고 |
|--------|-------------|-------------------------|-----|
|        | 장수서당동행정복지센터 | ○ 2021년 2월 3일(수요일), 14시 | 음식전 |

※ 코로나19에 따른 방역수칙 준수하여 개최  
▶ 최근 14일 이내 여행력이 있거나, 발열 또는 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가급적 행사에 참여하지 않을 것  
▶ 참석자는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등

4. 주민의견 제출기간 및 방법

○ 제출기간 : 2021년 2월 24일(수) 18:00까지  
○ 제출방법 : 공람장소에 비치된 주민의견서 양식에 의거 공람장소에 서면 제출  
○ 환경영향평가서(초안) 및 요약서는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에 게시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방재하수과(032-453-841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경기매일

2021년 1월 19일 화요일 019면 단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21-141호

### 음식전 소하천정비종합계획(안)(변경)·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음식전 소하천정비종합계획(변경) 수립에 대하여 「소하천정비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소하천 자정(변경) 및 자정도면(소하천구역, 소하천영역)고시에 대하여 「소하천정비법」 제3조, 제3조의3 및 제4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 규정에 의거 주민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3. 주민설명회 개최일시 및 장소

| 주민 설명회 | 장 소         | 개 회 일 시                 | 비 고 |
|--------|-------------|-------------------------|-----|
|        | 장수서당동행정복지센터 | ○ 2021년 2월 3일(수요일), 14시 | 음식전 |

※ 코로나19에 따른 방역수칙 준수하여 개최  
▶ 최근 14일 이내 여행력이 있거나, 발열 또는 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가급적 행사에 참여하지 않을 것  
▶ 참석자는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등

4. 주민의견 제출기간 및 방법

○ 제출기간 : 2021년 2월 24일(수) 18:00까지  
○ 제출방법 : 공람장소에 비치된 주민의견서 양식에 의거 공람장소에 서면 제출  
○ 환경영향평가서(초안) 및 요약서는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에 게시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방재하수과(032-453-841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 1. 19.

#### 남 동 구 청 장

## 나. 주민설명회

### (1) 주민설명회 개최 장소 및 일시

| 개최장소         | 개최일시                    | 참석인원 | 비 고 |
|--------------|-------------------------|------|-----|
| 장수서창동 행정복지센터 | 2021. 02. 03.(수), 14:00 | 18명  |     |

### (2) 주민설명회 개최 사진



### (3) 주민설명회 참석자 의견

#### ○ 주민설명회 주요 의견

| 주민의견                                                                                          | 답변내용                                                                                                                                                                                                                                                                                                                     |
|-----------------------------------------------------------------------------------------------|--------------------------------------------------------------------------------------------------------------------------------------------------------------------------------------------------------------------------------------------------------------------------------------------------------------------------|
| - 시점부 상유지역에 위치한 원지류는 그냥 놔두는 겁니까?                                                              | - 현재는 박스관거 이전까지고 생태복원계획을 통해 추후에 도시개발이 지정되어 있어서 그걸 할 때 같이 진행할 것 입니다.                                                                                                                                                                                                                                                      |
| - 현재상태 도로상태보다 공사후에 도로가 더 높아집니까?                                                               | - 계획은 홍수위라는 곳에 있는데 어디까지 올라가는지에 따라 물이 넘치지 않게끔 하는데 도로로 사용하는 곳이 해발 5m 정도라 홍수가 오게되면 최고수위가 7m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상류쪽은 다 침수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 제방 2m 정도 올리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 상태입니다.                                                                                                                                                     |
| - 2m가 높아지면 사람 키보다 높아지는데 시점과 연결부위는 어떤식으로 합니까?                                                  | - 시점부 연결부위는 현재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의거해서 하천과 연결되는 제방을 공사중에 있습니다. 현재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도로도 같이 제방을 올려 제방 상단에 제방쪽으로 해서 같이 연결하도록 하게끔 하였습니다. 기존에 있는 도로랑도 연결할 수 있게끔 구체적으로 계획을 할 것입니다.                                                                                                                                                           |
| - 현재 왼쪽 양안에서 한쪽은 소들이 있는 쪽이고 한쪽은 하천부지로 되어있는데 그 상태에서 2m가 높아지면 지게차 있는 부분과 사거리 부분과는 어떻게 연결할 것입니까? | - 아까 말씀 드린것처럼 일차적으로 하류쪽을 먼저 공사를 한 다음 올라오고 상류쪽은 장기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곳을 제방을 올리게 되면 현재 쓰고있는 공장이라던지 다 철거를 해야되는 상태가 되고, 그 보상이라던지 그 공사의 시기가 하류랑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같이 공사를 하게 되면 시간적 소요가 많이 되므로 그 계획은 장기계획으로 잡아놓고 향후에 도시계획에 의거해서 변경이 될 계획입니다. 실질적인 설계는 하류쪽에 국한되어 설계를 해 시행을 할것이고, 상류지역은 도시개발에 의거하여 향후 3~4년 이후에 그부분에 의해 재검토를 해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 - 국유지가 대부분인 고속도로 하류쪽은 1단계 공사를 하시고 상류쪽은 2단계 공사를 하시면 2단계공사 예정지는 다음 도시계획에 반영해서 진행하시겠다는 겁니까?      | - 네 맞습니다.                                                                                                                                                                                                                                                                                                                |
| - 기타 예정지역은 언제 하는겁니까?                                                                          | - 전체 부분 2.28km에 대해서 소하천 예정지로 지정을 한 이유는 사건상 재해 공법상 토지범위에 안 들어 갑니다. 소하천 예정지로 도면이 고시가 돼있다 하더라도 별도의 농경지가 아니면 농경지가 있는 곳은 별도로 제한을 두지는 않습니다.                                                                                                                                                                                    |

| 주민의견                                                                                                          | 답변내용                                                                                                                                                                                                                 |
|---------------------------------------------------------------------------------------------------------------|----------------------------------------------------------------------------------------------------------------------------------------------------------------------------------------------------------------------|
| - 경로당을 중심으로 해서 길이 좁고 약해 조금만 비가 와도 잠기는데 위에다가 덮어주고 그런 방침은 없나요?                                                  | - 요새 사회적 트렌드가 하천같은 경우는 생태블럭이나 친환경적으로 조성하는게 주 목적입니다. 이 부분은 구체적인 사업 시행계획을 할 때 개발계획으로 아직 확정이 안되어있기 때문에 이곳은 예정지로만 지정을 해놓고 당초에 실시설계나 이런 것은 진행을 안할 예정입니다.                                                                  |
| - 지금 제일 시급한건 경로당 주위에 홍수가 나게 되면 밀리고 경로당 쪽이 더 지반이 낮아요. 그래서 물이 안빠져 그곳이 잠기고 굴다리 옆도 항상 잠겨있는데 그곳은 그럼 2차인가요? 3차 인가요? | - 저희가 저번 집중호우 때 그곳을 한번 가봤습니다. 현재 상태는 하천정비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유속이 거의 없습니다. 경사로를 두게 되면은 정비가 된 이후에는 씻겨 내려가게 되는 부분입니다. 자연상태에서 유속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 회전부분이나 아치형부분이 심한겁니다. 우선적으로 공사하기 전에 이부분은 따로 증설을 하던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 - 시점에서부터 제1구간 경인제2고속도로 구간이 제일 중요한데 제일 나중에 공사합니까?                                                              | - 시구나 하천정비같은 경우는 하류도와 상류도가 원칙입니다. 그러나 도시개발에 의해 별도로 개발이 되게 되면 구체적으로 수립이 된 이후에 이 부분을 마지막 단계에 수립을 할거다 라고 그런식으로 말씀을 드린겁니다.                                                                                               |
| - 공사와 상관없이 준설을 자주 해줄수 있나요?                                                                                    | - 준설계획을 수립중에 있음.                                                                                                                                                                                                     |
| - 오폐수가 같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걸 병행해서 같이 나가게 되는건가요?                                                                      | - 개발계획은 오수와 폐수를 분리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
| - 운연천 주변이 너무 지저분한데 공사를 할 계획이 있습니까?                                                                            | - 지방하천 운연천 공사 착공은 작년 11월 30날 착공이 돼있습니다. 현재 현장사무실을 짓고 있습니다. 쓰레기나 그런 부분은 하천부분에 다 포함이 되면서 자동으로 정리가 되는 부분입니다.                                                                                                            |
| - 상류구간 고속도로 입출입 부분 하수 구멍하고 높이차이가 항상 나는데 장마가 오면 거기서부터 물이 차오르는데 높낮이를 맞춰서 물을 빼줄 수 있는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 - 유속의 흐름이 없다 보니까 항상 정체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따로 증설을 해드릴 것입니다.                                                                                                                                                             |

○ 주민의견서 제출 의견

- 의견 없음.

(4) 주민설명회 참석자 명부

주 민 설 명 회 참 석 자 명 부

|                 |                                     |            |              |
|-----------------|-------------------------------------|------------|--------------|
| ① 사 업 명         | 음실천 소하천정비종합계획(변경)(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            |              |
| ②사 업 장 위 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일원                    |            |              |
| ③ 주민설명회일시       | 2021년 02월 03일(수) 14:00              | ④ 주민설명회 장소 | 장수서창동 행정복지센터 |
| ⑤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            |              |
| 주 민 설 명 회 참 석 자 |                                     |            |              |
| 번 호             | 성 명                                 | 주 소        | 서 명          |
|                 | 이                                   |            |              |
|                 | 이                                   |            |              |
|                 | 김                                   |            |              |
|                 | 이                                   |            |              |
|                 | 서                                   |            |              |
|                 | 김                                   |            |              |
|                 | 이                                   |            |              |
|                 | 문                                   |            |              |
|                 | 양                                   |            |              |
|                 | 주                                   |            |              |
|                 |                                     |            |              |
|                 |                                     |            |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 주 민 설 명 회 참 석 자 명 부

|                 |                                     |            |              |
|-----------------|-------------------------------------|------------|--------------|
| ① 사 업 명         | 음실천 소하천정비종합계획(변경)(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            |              |
| ②사 업 장 위 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일원                    |            |              |
| ③ 주민설명회일시       | 2021년 02월 03일(수) 14:00              | ④ 주민설명회 장소 | 장수서창동 행정복지센터 |
| ⑤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            |              |
| 주 민 설 명 회 참 석 자 |                                     |            |              |
| 번 호             | 성 명                                 | 주 소        | 서 명          |
|                 | 송                                   |            |              |
|                 | 정                                   |            |              |
|                 | 김                                   |            |              |
|                 | 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 ☐ 관계기관 의견수렴 결과

## 가. 한강유역환경청

| 구 분                             | 초안 검토의견                                                                                                                                                                         | 반영계획                                                                                                                          | 비고 |
|---------------------------------|---------------------------------------------------------------------------------------------------------------------------------------------------------------------------------|-------------------------------------------------------------------------------------------------------------------------------|----|
| 한<br>강<br>유<br>역<br>환<br>경<br>청 | I. 총괄 의견                                                                                                                                                                        |                                                                                                                               |    |
|                                 | □본 계획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일원의 음실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것으로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 작성 시 반영하여야 함<br>- 하천환경과 수해상황 등을 고려하여 하천정비가 필요한 구간만 정비하고 하천환경이 양호한 구간은 보전하는 등의 친환경적인 계획으로 수립·반영 | □초안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소하천의 보전·복원 등 환경적인 측면에서 소하천정비 방향을 수립하여 제시하겠음.<br>- 최근 소하천 수해상황을 고려하여 하천정비가 필요한 구간에 한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하겠음.       | -  |
|                                 | □본 계획은 소하천 내에 축제, 교량 등을 정비하기 위한 기본계획인바, 토사·비점오염원 등 오염물질 저감방안을 수립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없도록 하여야 함<br>- 계획 소하천으로 생활하수 등 점·비점오염원이 유입되지 않도록 관리방안을 수립                            | □금회 계획 수립시 토사·비점오염원 등 오염물질의 유입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없도록 저감방안을 수립하겠음.<br>- 계획 소하천으로 생활하수 등 점·비점오염원이 유입되지 않도록 관리방안을 수립하겠음. | -  |
|                                 | □소하천별 체계적인 환경관리를 위한 공간정비계획을 우선 수립하고, 우수한 자연환경 및 보전지역에 연접한 구간의 경우 적정규모의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금회 계획 수립시 음실천 전 구간은 복원지구로 설정하여 향후 하천의 자연성을 복원할 수 있도록 공간관리계획을 수립하였음.                                                          | -  |
|                                 | II. 세부 검토의견                                                                                                                                                                     |                                                                                                                               |    |
|                                 | 가. 계획의 적정성                                                                                                                                                                      |                                                                                                                               |    |
|                                 | □본 계획 소하천이 유입되는 국가·지방하천의 하천기본계획과 풍수해저감종합계획 등 관련 계획과의 부합 여부를 검토하고, 이와 연계하여 유역 단위의 일관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계획수립시 인천광역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및 검단천 등 9개 하천 하천기본계획(변경)을 검토하여 상위계획에 부합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음.                                                   | -  |
|                                 | □계획 소하천에서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실시계획을 파악하고, 금회 개수계획과 중복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필요성과 효과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계획의 타당성을 확보하여야 함<br>- 사업구간에 대해 기수립 당시의 개수계획 및 공사시행 여부를 확인하고 중복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계획의 타당성 확보            | □음실천은 과거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후 실시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으며, 금회 하천 전 구간을 대상으로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 수립하였음.                                                    | -  |

| 구 분                             | 초안 검토의견                                                                                                                                                                                          | 반영계획                                                                                                                          | 비고 |
|---------------------------------|--------------------------------------------------------------------------------------------------------------------------------------------------------------------------------------------------|-------------------------------------------------------------------------------------------------------------------------------|----|
| 한<br>강<br>유<br>역<br>환<br>경<br>청 | 나. 입지의 타당성                                                                                                                                                                                       |                                                                                                                               |    |
|                                 | 1) 자연환경의 보전                                                                                                                                                                                      |                                                                                                                               |    |
|                                 | 가)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                                                                                                                               |    |
|                                 | <input type="checkbox"/> 동·식물 현황자료(종 다양성 등), 환경자료(수질, 경관 등), 식생 도시화지수 또는 생활형 분석, 육수생물 생물군집지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환경특성에 맞는 하천정비계획을 수립·제시하여야 함<br>- 소하천의 수생태적 특성을 고려한 수생물의 서식지 보전, 복원 및 개선을 위한 수환경 계획 수립 | <input type="checkbox"/> 금회 계획수립시 수생태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수생물의 서식지가 보전 및 복원 될 수 있도록 복원지구로 설정하였음.                                       | -  |
|                                 | <input type="checkbox"/> 문헌 및 현지조사 시 법정보호종(황조롱이 등)이 확인된바, 종별로 생태특성을 고려한 적정 보호대책을 검토·제시하여야 함                                                                                                      | <input type="checkbox"/> 문헌 및 현지조사 시 법정보호종(황조롱이 등)이 확인된바, 종별로 생태특성을 고려한 적정 보호대책을 검토·제시하겠음.                                    | -  |
|                                 | <input type="checkbox"/> 하폭확장 등 하천정비 시 하상교란이 일어나므로 영향예측과 저감방안을 수립하고, 특히 수생태계가 양호한 지점의 경우 사업시행 중 하상교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함                                                                           | <input type="checkbox"/> 공사시 하상교란으로 인한 수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기위하여, 오탉방지막 등의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제시하겠음.                                    | -  |
|                                 | 나)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                                                                                                                               |    |
|                                 | <input type="checkbox"/> 제방 및 호안은 치수안정도 확보, 수생태계와 육상생태계의 단절방지 및 다양한 수변식물의 정착을 위하여 환경사로 조성하고 식생 활착과 주변 녹지와 연결성을 확보하여야 함.                                                                          | <input type="checkbox"/> 금회 계획수립시 주변지역의 토지이용현황 등을 고려하여 사유지편입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1:0.5의 호안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호안공법은 식생활착이 가능한 식생블럭공법을 적용하였음. | -  |
|                                 | <input type="checkbox"/> 과도한 제방계획은 하천구역 편입에 따른 사유재산 침해가 우려되므로 제방 설치에 의해 보호되는 시설물 및 토지이용현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구간에 한해서 제방 축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input type="checkbox"/> 금회 계획수립시 홍수위 검토 및 시설물 능력검토를 통하여 필요구간에 한하여 개수계획을 수립하였음.                                               | -  |
|                                 | <input type="checkbox"/> 하천의 기존 수계, 선형 및 구배를 최대한 유지하도록 하고, 하상구조를 불필요하게 훼손하지 않는 등 자연성을 보전하여야 함                                                                                                    | <input type="checkbox"/> 금회 계획수립시 소하천의 선형 및 구배는 최대한 현재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음.                                                 | -  |



| 구 분                             | 초안 검토의견                                                                                                                                                  | 반영계획                                                                                                             | 비고 |
|---------------------------------|----------------------------------------------------------------------------------------------------------------------------------------------------------|------------------------------------------------------------------------------------------------------------------|----|
| 한<br>강<br>유<br>역<br>환<br>경<br>청 | 나. 입지의 타당성                                                                                                                                               |                                                                                                                  |    |
|                                 | 1) 자연환경의 보전                                                                                                                                              |                                                                                                                  |    |
|                                 | 다)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                                                                                                                  |    |
|                                 | □수변경관 조성을 위하여 식재되는 식물 종은 현지 수변식생을 중심으로 계획하여 주변 자연경관과 이질적인 경관이 조성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현지 수변식생 활착이 가능한 식생블록 호안계획을 수립하여 주변 자연경관과 이질감을 조성하지 않도록 계획을 수립하겠음.                                               | -  |
|                                 | □하천시설물(축제, 교량 등)의 형태, 규모, 색채 및 재질 등은 주변환경에 조화되도록 계획하여야 함                                                                                                 | □실시설계시 인천광역시 경관조례에 따라 하천시설물이 주변환경과 조화될 수 있도록 형태, 규모, 색채 및 재질 등을 선정하도록 하겠음.                                       | -  |
|                                 | □사업 시행 전·후 경관 변화를 확인할 수 있도록 주요지점에서 축제, 호안 등에 따른 계획을 반영한 경관시물레이션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경관계획을 수립·제시하여야 함                                                            | □금회 계획은 기본계획단계로 개수계획 수립구간에 대해서만 선정하는 단계로 세부적인 공사계획은 수립되지 않음.<br>따라서, 향후 실시설계단계에서 경관시물레이션을 실시하여 제시토록 하겠음.         | -  |
|                                 | 라) 수환경의 보전                                                                                                                                               |                                                                                                                  |    |
|                                 | □유로변경 계획여부를 제시하고, 유로변경 시 계획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증빙하는 근거를 제시하여야 함<br>- 변경 전·후의 잠재적 재해 위험성을 비교·검토하고, 하천생태계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저감방안을 수립·제시하여 유로변경 계획의 불가피성과 당위성을 확보 | □금회 소하천정비계획 수립시 소하천의 자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유로변경계획은 배제하였음.                                                                | -  |
|                                 | □공사 시 발생하는 오수는 전량 위탁처리하고 별도의 오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할 경우 계획소하천의 수질 목표기준을 감안하여 관리하여야 함                                                                              | □공사시 현장사무소는 인근마을의 기존 건축물을 이용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며, 현장사무소 설치시 간이화장실을 설치 할 경우 전량 위탁처리하며, 오수처리시설 설치시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하도록 계획하였음. | -  |

| 구 분     | 초안 검토의견                                                                                                                                                                                                                                                                                                                                                                                                                                                                                                                                                                     | 반영계획                                                                                                                                                                                                                                                                                                                                                                                                                                                              | 비고 |
|---------|-----------------------------------------------------------------------------------------------------------------------------------------------------------------------------------------------------------------------------------------------------------------------------------------------------------------------------------------------------------------------------------------------------------------------------------------------------------------------------------------------------------------------------------------------------------------------------|-------------------------------------------------------------------------------------------------------------------------------------------------------------------------------------------------------------------------------------------------------------------------------------------------------------------------------------------------------------------------------------------------------------------------------------------------------------------|----|
| 한강유역환경청 | 나. 입지의 타당성                                                                                                                                                                                                                                                                                                                                                                                                                                                                                                                                                                  |                                                                                                                                                                                                                                                                                                                                                                                                                                                                   |    |
|         | 1) 자연환경의 보전                                                                                                                                                                                                                                                                                                                                                                                                                                                                                                                                                                 |                                                                                                                                                                                                                                                                                                                                                                                                                                                                   |    |
|         | 라) 수환경의 보전                                                                                                                                                                                                                                                                                                                                                                                                                                                                                                                                                                  |                                                                                                                                                                                                                                                                                                                                                                                                                                                                   |    |
|         | <input type="checkbox"/> 하천별 홍수량, 하천 특성 및 주변 여건, 아래 사항 등을 충분히 재검토하여, 사업 후 홍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규모의 사업계획을 수립·제시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계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하도 전 구간의 치수안정성을 확보하는 시설물 위주의 과도한 치수계획 수립 최소화</li> <li>- 홍수위에 대한 제방 여유고가 크게 부족하지 않거나 현 하폭과 계획 하폭의 차이가 미미할 경우 현 하폭을 유지한 상태에서 제방여유고를 확보하는 방안 검토·제시</li> <li>- 하폭확장 및 하도정비로 인한 건천화·직선화가 되지 않도록 불필요한 준설 및 하상 평탄화 계획은 배제</li> <li>- 호안계획은 현 호안의 식생활착 상태와 제방 안정성 및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수립 여부를 검토</li> <li>- 재가설을 계획한 교량 중 연장이 충분한 경우, 여유고와 경간장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유수소통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될 경우 존치하는 방안 검토·제시</li> </ul> | <input type="checkbox"/> 홍수에 의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검토하였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류의 기점수위 상승으로 인한 치수안정성 확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치수계획이 되도록 계획하였음</li> <li>- 현 하폭을 최대치로 유지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으며, 여유고는 하천설계기준에서 제시하는 최소 여유고 0.6m를 적용하였음</li> <li>- 하폭확장은 최대치로 억제하였으며 하상 평탄화 계획은 배제하였음</li> <li>- 현 호안은 식생활착이 어려운 석축쌓기로 되어 있으나, 금회에서 자연친화적인 공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였음</li> <li>- 교량 재가설은 유수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지점에 대하여 검토 하였으며 하폭 및 경간장을 고려하여 단경간으로 충분한 통수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음</li> </ul> | -  |
|         | <input type="checkbox"/> 독마루(관리용 도로) 및 교량에서의 비점오염물질 등이 하천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비점오염물질 처리 및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input type="checkbox"/> 본 계획은 소하천정비종합계획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로서 본안시점·비점오염물질에 대한 저감방안을 제시하여 향후 실시설계시 저감방안을 이행 할 수 있도록 제시 하였으며, 비점오염물질 처리 시설을 설치시 추가 사유지 매입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 및 민원 발생의 소지가 있어 비점오염물질 시설 설치 계획은 반영하지 않았음.                                                                                                                                                                                                                                                          | -  |
|         | <input type="checkbox"/> 「중권역별 수질 및 수생태계 목표기준(환경부)」과 하천의 특성을 고려한 목표수질을 설정·제시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도록 수질개선방안 및 관리방안, 오염원 관리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반영하여야 함                                                                                                                                                                                                                                                                                                                                                                                                                                    | <input type="checkbox"/> 금회 계획수립시 중권역별 수질 및 수생태계 목표기준에 따라 한강서해 중권역 목표기준인 II등급(약간 좋음)을 목표기준으로 설정하였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질개선 방안 및 관리방안, 오염원 관리계획을 제시하겠음.                                                                                                                                                                                                                                                                                                                  | -  |

| 구 분                             | 초안 검토의견                                                                                                                                                                                                                           | 반영계획                                                                                                                                                        | 비고 |
|---------------------------------|-----------------------------------------------------------------------------------------------------------------------------------------------------------------------------------------------------------------------------------|-------------------------------------------------------------------------------------------------------------------------------------------------------------|----|
| 한<br>강<br>유<br>역<br>환<br>경<br>청 | 나. 입지의 타당성                                                                                                                                                                                                                        |                                                                                                                                                             |    |
|                                 | 2) 생활환경의 안정성                                                                                                                                                                                                                      |                                                                                                                                                             |    |
|                                 | 가) 환경기준 부합성                                                                                                                                                                                                                       |                                                                                                                                                             |    |
|                                 | <input type="checkbox"/> 하천 저질의 중금속 오염도 조사·분석을 통해 하천의 퇴적물 오염도 현황을 제시하고 오염도를 평가하여야 함.<br>- 하천 저질 조사 지점 및 분석대상 물질 선정 등 주변 오염원 시설 분포를 고려하여 선정하고 오염도 평가 결과에 따라 오염도 개선을 위한 조치계획을 수립·제시                                                 | <input type="checkbox"/> 금회 계획수립시 음실천내 2개소에서 하천 퇴적물 오염도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평가결과 전항목에서 Ⅰ~Ⅱ등급으로 조사되었음.                                                               | -  |
|                                 | <input type="checkbox"/> 축제 등 토공 작업 시 비산먼지가 재비산되지 않도록 실효성있는 비산먼지 저감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 <input type="checkbox"/> 공사시 비산먼지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위하여 세륜 및 측면살수, 살수차량운행, 부직포설치 등과 같은 저감방안을 수립하겠음.                                                              | -  |
|                                 | <input type="checkbox"/> 공사 시, 소음·진동에 의한 정온시설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저감방안을 수립하여야 함.<br>- 사업구간과 근거리에 위치한 정온시설 현황을 제시하고, 소음 영향 예측 결과를 토대로 저감방안 수립<br>- 소음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작업시간 제한을 제외한 실효성 있는 공사소음 관리 계획(가설방음패널 높이 상향조정, 관리인력 운영, 추가 방음시설 설치 등)을 수립 | <input type="checkbox"/> 금회 단계는 기본계획 단계로 실제 토공물량에 따른 장비투입 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정량적인 예측을 하는데에 어려움이 있어 최소투입장비를 기준으로 소음영향예측 결과를 토대로 저감방안을 수립하여 제시하겠음.                   | -  |
|                                 | 나)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                                                                                                                                                             |    |
|                                 | <input type="checkbox"/> 공사 시 폐유, 건설폐기물 등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 및 처리대책을 수립하여야 함.<br>- 폐유 등의 유출에 의한 수질오염사고에 대비하여 인근 방제기관 및 업체 비상연락망 구축·정비 등 수질오염사고 예방·방제대책 수립 후, 공사 시행 등                                                                | <input type="checkbox"/> 공사 시 폐유 등의 유출에 의한 수질오염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인근 방제기관 및 업체 비상연락망 구축·정비 등 수질오염사고 예방·방제대책 수립 후, 공사 시행 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겠음.                         | -  |
|                                 | <input type="checkbox"/> 하천 시설물의 철거 또는 신축 공사 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에 대하여 성상·종류별 발생량을 산정하고 발생 건설폐기물에 대한 관리목표(%)를 설정하여야 하며 폐기물 재활용성 향상을 위하여 시행 계획 수립 시 계획 관리목표를 반영한 폐기물 처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input type="checkbox"/> 현 단계는 기본계획 단계로 세부공사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발생량을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실시설계시 발생량을 산정하여 제시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성 향상을 위하여 금회 관리목표를 제시하고 실시설계시 이행 할 수 있도록 계획하겠음. | -  |

| 구 분                             | 초안 검토의견                                                                                                                                                                                                                                                                                      | 반영계획                                                                                                                                                                                                                                                                | 비고 |
|---------------------------------|----------------------------------------------------------------------------------------------------------------------------------------------------------------------------------------------------------------------------------------------------------------------------------------------|---------------------------------------------------------------------------------------------------------------------------------------------------------------------------------------------------------------------------------------------------------------------|----|
| 한<br>강<br>유<br>역<br>환<br>경<br>청 | 나. 입지의 타당성                                                                                                                                                                                                                                                                                   |                                                                                                                                                                                                                                                                     |    |
|                                 | 3) 사회 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                                                                                                                                                                                                                                                                     |    |
|                                 | <input type="checkbox"/> 하천 주변의 자연환경, 토지이용현황 등을 고려하여 하천공간 관리의 기본방향, 정비목표 등 하천공간 관리계획을 수립·제시하여야 함.                                                                                                                                                                                            | <input type="checkbox"/> 하천 주변의 자연환경, 토지이용현황 등을 고려하여 공간 관리계획을 수립·제시하겠음.                                                                                                                                                                                             | -  |
|                                 | <input type="checkbox"/> 재해예방뿐만 아니라 환경개선 및 수질보전 목적으로 하천을 정비하여야 하므로, 계획 하천에 대한 환경개선 및 수질보전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함.                                                                                                                                                                            | <input type="checkbox"/> 금회 계획수립시 환경개선 및 수질보전을 위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해당 내용을 보고서에 수록하였음.                                                                                                                                                                                  | -  |
|                                 | Ⅲ. 기 타                                                                                                                                                                                                                                                                                       |                                                                                                                                                                                                                                                                     |    |
|                                 | <input type="checkbox"/>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본 검토의견과 타 관계행정기관 및 주민 등의 의견 수렴결과를 종합하여 그 내용 및 반영여부를 요약제시(각 기관 및 주민의견 수렴 구분)하고, 반영된 의견은 해당항목에 작성·제시하여야 함.                                                                                                                                                 | <input type="checkbox"/> 한강유역환경청 및 검토기관 등의 의견 수렴결과를 종합하여 반영여부를 제시하고 해당 항목에 작성하겠음.                                                                                                                                                                                   | -  |
|                                 | <input type="checkbox"/> 평가서상의 환경현황 조사내용, 환경영향 예측결과 및 저감대책 등의 모든 내용은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하며, 가능한 정량화 하여야 함<br>- 특히, 현황조사 및 조사결과는 조사자 인적사항 및 조사자 의견을 첨부 제시하고 장래 환경영향 예측(예측조건, 예측적용 방법, 예측 시 사용계획, 수치 등)은 그 적용 및 산정근거를 명확히 제시<br>- 관계법령 및 관련 행정계획과 연관되는 내용은 그 근거를 기술하고, 그 내용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사본 등의 근거자료를 제시 | <input type="checkbox"/> 평가서상의 환경현황 조사내용, 환경영향 예측결과 및 저감대책 등의 모든 내용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으며, 본 계획은 기본계획 단계로 정량적인 예측에 어려움이 있어 정성적인 예측을 시행하겠음.<br>- 현황조사 및 조사결과는 조사자 인적사항 및 조사자 의견을 첨부 제시하겠음.<br>- 관계법령 및 관련 행정계획과 연관되는 내용은 그 근거를 기술하고, 그 내용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사본 등의 근거자료를 제시하겠음. | -  |
|                                 | <input type="checkbox"/>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하천 정비내용(시설물 설치계획)을 총괄표로 정리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input type="checkbox"/> 금회 소하천 정비종합계획에 따른 시설물 설치계획을 총괄표로 정리하여 제시하겠음.                                                                                                                                                                                               | -  |
|                                 | <input type="checkbox"/>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별표2]에 따라 부록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끝.                                                                                                                                                                                                         | <input type="checkbox"/> 좌기와 같이 이행하겠음.                                                                                                                                                                                                                              | -  |

나. 인천광역시 기후환경정책과

| 구 분                  | 초안 검토의견                                                                                                                                                                                                                                                                                  | 반영계획                                                                                                                                                                         | 비고 |
|----------------------|------------------------------------------------------------------------------------------------------------------------------------------------------------------------------------------------------------------------------------------------------------------------------------------|------------------------------------------------------------------------------------------------------------------------------------------------------------------------------|----|
| 인천광역시<br>기후환경<br>정책과 | I. 총괄 의견                                                                                                                                                                                                                                                                                 |                                                                                                                                                                              |    |
|                      | <input type="checkbox"/> 본 계획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관내 소하천의 효율적 이용과 체계적 정비를 위하여 소하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검토 의견과 여타 관계 행정기관 및 주민의견 수렴결과를 종합, 그 내용 및 반영 여부를 요약 제시(각 기관 및 주민 의견수렴 구분)하고 반영된 의견은 해당항목에 작성·제시하여야 함.<br>- 각 항목별 예측·평가에 따른 저감방안을 공사시와 운영시로 구분하여 최종적으로 반영할 저감방안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확정·제시. | <input type="checkbox"/> 관계기관의 검토의견 및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에 대한 반영여부를 해당 페이지와 함께 제시하겠음.                                                                                              | -  |
|                      | <input type="checkbox"/> 신천과 음실천의 합류지점은 직류보다 곡류로 설계를 검토하고, 수문을 설치하여 수해 등을 방지하여야 함.                                                                                                                                                                                                       | <input type="checkbox"/> 신천과 음실천 합류점은 신천하천기본계획 수립시 수문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현재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신천 자연형하천 조성공사”가 진행중에 있음.<br>따라서 금회 계획수립시 별도 수문설치계획은 수립하지 않음.                      | -  |
|                      | <input type="checkbox"/> 하천의 생태복원력을 높이기 위하여 호안경사를 기존 1:0.5를 1:1로 완만하게 계획하여야 함.<br>- 하폭이 넓게 확보되는 지점은 호안의 경사를 완만하게 시공하고, 사면은 생태복원효과 큰 호안블럭 사용하기 바람.                                                                                                                                        | <input type="checkbox"/> 호안경사를 1:1.0의 완경사로 계획 할 경우, 사유지 추가편입으로 인한 토지보상비 증가, 주민 민원 증가 가 예상되며, 부득이하게 호안경사는 1:0.5로 계획하였으며, 식생활착이 가능한 식생블럭을 적용하는 것으로 계획하여 생태복원력을 높일 수 있도록 계획하였음. | -  |
|                      | <input type="checkbox"/> 전략환경영향평가 검토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환경영향, 예측의 부적정 등으로 주변 환경에 악영향이 발생하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사전에 이에 대한 원인 분석을 실시하고 본 협의내용 외 별도의 추가대책을 신속히 강구·시행하여 환경관련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함.                                                                                                           | <input type="checkbox"/> 금회 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상에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 또는 예측 부적정 등으로 인한 주변 환경에 추가적인 영향이 있거나, 있을 것으로 우려 될 경우 본 검토 내용 외에 추가적으로 별도대책을 신속히 강구 시행하겠음.                          | -  |

| 구 분              | 초안 검토의견                                                                                                                                                                                                                                                                                                                       | 반영계획                                                                                                                                                                       | 비고 |
|------------------|-------------------------------------------------------------------------------------------------------------------------------------------------------------------------------------------------------------------------------------------------------------------------------------------------------------------------------|----------------------------------------------------------------------------------------------------------------------------------------------------------------------------|----|
| 인천광역시<br>기후환경정책과 | II. 항목별 검토의견                                                                                                                                                                                                                                                                                                                  |                                                                                                                                                                            |    |
|                  | 1) 자연환경의 보전                                                                                                                                                                                                                                                                                                                   |                                                                                                                                                                            |    |
|                  | <input type="checkbox"/>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육상 동·식물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1회(7월)에 현지조사를 하여 황조롱이, 삿갓기 등이 확인되었는 바, 종별 출현시기 등을 고려하여 사계절 조사하여 법정보호종 출현여부 등의 정밀 조사가 필요하며 야생생물 서·번식지에 영향이 없도록 보호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함.<br>- 야생동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생육이 왕성한 시기에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모니터링 결과, 사업시행에 따른 직·간접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판명될 경우 공사를 중지하고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보전 또는 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input type="checkbox"/> 금회 계획은 기본계획 수립단계로 향후 실시설계 수립시 추가현지조사를 시행하여 보호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제시하였음.<br>또한, 좌기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 제시하여 향후 실시계획 수립시 이행할 수 있도록 제시하였음.                         | -  |
|                  | <input type="checkbox"/> 공사 시 및 운영 시 법정보호종의 출현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이 예상될 때에는 보호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input type="checkbox"/> 현지조사시 발견된 생태계교란 생물(미국쭉부새이 등)에 대하여는 「생태계 교란 생물현장관리 핸드북(2016, 환경부)」을 참고하여 관리방안 수립 시행하여야 함.                                                          | -  |
|                  | <input type="checkbox"/> 신천과 음실천의 합류지점은 직류보다 곡류로 설계를 검토하고, 수문을 설치하여 수해 등을 방지하여야 함.                                                                                                                                                                                                                                            | <input type="checkbox"/> 신천과 음실천 합류점은 신천하천기본계획 수립시 수문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현재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신천 자연형하천 조성공사”가 진행중에 있음.<br>따라서 금회 계획수립시 별도 수문설치계획은 수립하지 않음.                    | -  |
|                  | <input type="checkbox"/> 하천의 생태복원력을 높이기 위하여 호안경사를 기존 1:0.5를 1:1로 완만하게 계획하여야 함.<br>- 하폭이 넓게 확보되는 지점은 호안의 경사를 완만하게 시공하고, 사면은 생태복원효과 큰 호안블럭 사용하기 바람.                                                                                                                                                                             | <input type="checkbox"/> 호안경사를 1:1.0의 완경사로 계획 할 경우, 사유지 추가편입으로 인한 토지보상비 증가, 주민민원 증가가 예상되며, 부득이하게 호안경사는 1:0.5로 계획하였으며, 식생활착이 가능한 식생블럭을 적용하는 것으로 계획하여 생태복원력을 높일 수 있도록 계획하였음. | -  |

| 구 분                                                          | 초안 검토의견                                                                                                                                                                | 반영계획                                                                                                         | 비고 |
|--------------------------------------------------------------|------------------------------------------------------------------------------------------------------------------------------------------------------------------------|--------------------------------------------------------------------------------------------------------------|----|
| 인<br>천<br>광<br>역<br>시<br><br>기<br>후<br>환<br>경<br>정<br>책<br>과 | II. 항목별 검토의견                                                                                                                                                           |                                                                                                              |    |
|                                                              | 1) 자연환경의 보전                                                                                                                                                            |                                                                                                              |    |
|                                                              | □공사 시 하천의 기존 선형 및 구배를 최대한 유지하고 하상구조를 불필요하게 훼손하지 않는 등 자연성을 보전하고 갈수기 유속감속, 정체에 따른 부정적인 수질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과도한 하천 저수로의 확장은 지양하여야 함.                                          | □금회계획 수립시 하천의 기존 선형 및 구배를 최대한 유지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시설물 능력 검토 및 홍수위 검토를 통하여 필요한 구간에 한하여 개수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음. | -  |
|                                                              | □하천 내 초기강우에 의한 우수, 토사 등 공사 시 비점오염원 등 오염물질 저감방안을 철저히 수립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함.                                                                                  | □공사시 초기강우에 의한 비점오염물질 발생으로 인하여 하천의 수질 및 수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물돌리기공법 등의 저감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음.                  | -  |
|                                                              | 2) 생활 환경의 안전성                                                                                                                                                          |                                                                                                              |    |
|                                                              | □공사시 진·출입로 선포장(친환경재료 사용), 주기적인 살수 등 비산먼지 발생에 따른 저감시설 설치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함.                                                                                                 | □공사차량 진·출입로에 세륜 및 측면살수시설 설치, 살수차량 운행, 부직포 설치 등으로 비산먼지 발생에 대한 저감방안을 수립하겠음.                                    | -  |
| 인<br>천<br>광<br>역<br>시<br><br>관<br>련<br>부<br>서                | I. 대기보전과                                                                                                                                                               |                                                                                                              |    |
|                                                              | 1) 대기분야 공사시                                                                                                                                                            |                                                                                                              |    |
|                                                              | □공사 시행전에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이행하여야 함.                                                                                                                            | □공사착공 전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이행하겠음.                                                                               | -  |
|                                                              | □공사 시행전 공사용 진·출입 도로를 우선 포장하고 공사 장비 및 차량 운행속도를 제한(20km/h 이하) 하여야 하며, 공사장 둘레에 방진벽 또는 방진망(상단 H=1.8m이상)을 전구간에 설치하고 주거지 인접지역은 높이 3.0m 이상의 방진벽 설치하고 야적물에 대하여는 방진덮개를 설치하여야 함. | □금번 단계는 기본계획 수립단계로 정량적인 예측에 어려움이 있어 불가피하게 정성적으로 예측하여 저감방안을 수립하였으며, 향후 실시계획 시 저감시설의 높이 및 연장을 확정하여 제시하겠음.      | -  |

| 구 분                                           | 초안 검토의견                                                                                                                                                                                                                                                                                                                                                                                                                                                                                                                                                      | 반영계획                                                                                                                                                                                                                                        | 비고 |
|-----------------------------------------------|--------------------------------------------------------------------------------------------------------------------------------------------------------------------------------------------------------------------------------------------------------------------------------------------------------------------------------------------------------------------------------------------------------------------------------------------------------------------------------------------------------------------------------------------------------------|---------------------------------------------------------------------------------------------------------------------------------------------------------------------------------------------------------------------------------------------|----|
| 인<br>천<br>광<br>역<br>시<br><br>관<br>련<br>부<br>서 | 1) 대기분야 공사시                                                                                                                                                                                                                                                                                                                                                                                                                                                                                                                                                  |                                                                                                                                                                                                                                             |    |
|                                               | □공사차량에 의한 토사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자동세륜·세차시설을 공사장 출구에 설치 사용하여야 하며 반드시 운송차량 적재함은 밀폐식 방진덮개를 설치하여야 함.                                                                                                                                                                                                                                                                                                                                                                                                                                                                      | □건설장비 차체에 부착된 토사가 유출·비산되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차량 진출입부에 세륜 및 측면살수시설 설치를 계획하였으며, 토사운반 차량의 적재함은 덮개로 덮어 운행하도록 계획하였음.                                                                                                                             | -  |
|                                               | □비포장도로의 경우 차량운행으로 인한 날림먼지 발생이 우려되므로 이동식 살수시설을 운행하여 주기적인 살수를 실시하여야 함. (최소 1일 2회 이상 살수해도 먼지가 발생할시 즉시 추가 살수 조치)                                                                                                                                                                                                                                                                                                                                                                                                                                                 | □공사시 살수차량 운행계획을 수립하여 비산먼지 발생으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 하도록 계획을 수립하였음.                                                                                                                                                                                    | -  |
|                                               | □포장도로의 경우 공사장 내부 포장된 주도로 및 주변 인근도로에서 날림먼지의 발생억제에 따른 살수 후 재 비산되는 먼지 발생의 억제를 위한 살수차 운영뿐만 아니라 분진진공흡입차량 등의 운영대책이 필요함.                                                                                                                                                                                                                                                                                                                                                                                                                                            | □금번 단계는 기본계획 수립단계로 세부적인 공사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구체적인 저감방안을 수립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향후 실시설계시 세부 공사계획에 따라 저감방안을 수립하여 비산먼지로 인한 환경상의 피해를 저감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겠음.<br>또한 금회 계획은 하천구역내에서 시행되는 사업으로 습윤토사로 인해 미세먼지의 발생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어 별도의 미세먼지 측정기는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계획하였음. | -  |
|                                               | □공사장이 광범위하고 장기간 공사가 진행되므로 토사야적장 및 나대지에 대하여 비산먼지 발생억제제 살포 및 섬유매트 포설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                                                                                                                                                                                                                                             |    |
|                                               | □미세먼지 발생공정 위치에 미세먼지 측정기(1등급)를 설치하고 주 출입구 등에서 측정농도를 확인할 수 있는 전광판 시설을 설치 미세먼지 농도 공개                                                                                                                                                                                                                                                                                                                                                                                                                                                                            |                                                                                                                                                                                                                                             |    |
|                                               | □공사시 투입되는 차량 및 장비 가동시 발생하는 배출가스에 의한 대기질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후 장비는 사용을 금지하고 최신장비(저공해 조치 건설기계 포함※)를 운영하되 불필요한 엔진 공회전을 제한하여야 하며 환경관리인을 배치하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함<br><b>※저공해 조치 대상 건설기계</b>                                                                                                                                                                                                                                                                                                                                                                                | □실시설계시 저공해조치 건설기계 사용 의무 대상여부를 검토하여, 해당될 경우 공사 시 투입되는 차량 및 장비는 노후장비 사용을 지양하고 저공해 조치 건설기계를 운영토록 하며, 환경관리인을 배치하여 관리 감독하는 것으로 계획함.                                                                                                              |    |
|                                               | <div data-bbox="236 1451 778 178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기계 중 저공해조치 대상은 다음과 같음</li> <li>· 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 믹서트럭 : 최초등록일이 2005년 12월 31일 이전 자동차 및 2006년 1월 1일 이후 출고된 차량 중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자동차로 총중량이 2.5톤 이상인 건설기계</li> <li>· 굴삭기, 지게차 :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Tier1 이하 적용 건설기계</li> <li>- 저공해조치 대상 중 다음의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함.</li> <li>·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PM-NOx) 부착한 건설기계</li> <li>· 저공해 신형엔진으로 교체한 건설기계(Tier1~Tier3 이상)</li> </ul> </div> <p>※ 행정·공공기관 발주 100억원 이상 사업은 2020.4.3.부터 저공해조치 건설기계 사용 의무(근거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1조)</p> |                                                                                                                                                                                                                                             | -  |



| 구 분           | 초안 검토의견                                                                                                                                                                                                                                                                                   | 반영계획                                                                                                                                    | 비고 |
|---------------|-------------------------------------------------------------------------------------------------------------------------------------------------------------------------------------------------------------------------------------------------------------------------------------------|-----------------------------------------------------------------------------------------------------------------------------------------|----|
| 인천광역시<br>관려부서 | 1) 대기분야 공사시                                                                                                                                                                                                                                                                               |                                                                                                                                         |    |
|               | <input type="checkbox"/> 공사장 내 폐목, 쓰레기 등을 드럼통에 소각하는 일이 없도록 공사장 근로자 대상으로 교육 실시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함                                                                                                                                                                                           | <input type="checkbox"/> 공사 시 폐목, 쓰레기 등을 드럼통에 소각하는 일이 없도록 공사장 근로자 대상으로 교육 실시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겠음.                                           | -  |
|               | <input type="checkbox"/>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공사장 운영 단축·조정 하여야 함<br>- 시행시간 : 비상저감조치 발령 다음날 06시부터 21시까지<br>- 근거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 <input type="checkbox"/> 좌기 의견을 본안에 명기하여 향후 시행계획단계에서 이행 할 수 있도록 제시함.                                                                    | -  |
|               | <div>           - 비산먼지 발생 신고시 비상저감조치 관련 공사장 관리카드 작성 및 이행<br/>           · 공사시간 단축·조정(출퇴근 시간 실외작업 중지, 비산공정 단축)<br/>           · 비산먼지 발생억제 강화(방진덮개 복포, 먼지억제제 살포 등)<br/>           · 공사장 내 살수 및 세륜 강화(터널식 세차시설 운영 등)<br/>           · 공사장 주변 주민 보호(공사장 주변 살수 및 분진 제거 차량 운행 등)         </div> |                                                                                                                                         |    |
|               | 2) 대기분야 운영시                                                                                                                                                                                                                                                                               |                                                                                                                                         |    |
|               | <input type="checkbox"/> 본 평가서에 제시된 비산먼지 저감 대책이 향후 사업자가 공사를 시행 할 때 관할 구청에 신청하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서』의 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 설치 내역에 반영 될 수 있도록 관할 구청에 대기 분야 내용 통보                                                                                                                                         | <input type="checkbox"/> 좌기 의견을 본안에 명기하여 향후 시행계획단계에서 이행 할 수 있도록 제시함.                                                                    | -  |
|               | 3) 악취분야 공사시                                                                                                                                                                                                                                                                               |                                                                                                                                         |    |
|               | <input type="checkbox"/> 공사시 철거 및 폐기물 운반시 냄새(악취)가 나지 않도록 관리 철저하여야 하며, 생활쓰레기 및 건설폐기물 등 소각금지                                                                                                                                                                                                | <input type="checkbox"/> 공사시 철거 및 폐기물 운반시 냄새(악취)가 나지 않도록 관리 하며, 생활쓰레기 및 건설폐기물 등은 전량 위탁처리하겠음.                                            | -  |
|               | II. 생활환경과                                                                                                                                                                                                                                                                                 |                                                                                                                                         |    |
|               | <input type="checkbox"/> 공사 시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되거나, 예측 결과 부적정으로 인한 환경피해가 발생될 경우 공사를 중단하고 조치 방안을 수립 시행 후 공사를 재개 하여야 함.                                                                                                                                                                        | <input type="checkbox"/> 공사 시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되거나, 예측 결과 부적정으로 인한 환경피해가 발생될 경우 조치 방안을 수립 시행 후 공사를 재개 하겠음.                                 | -  |
|               | <input type="checkbox"/> 사업 시행과정에서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한 지역이 있을 경우 오염 사실을 관할 관청에 신고하고 정밀조사 및 정화 조치 후 사업 시행하여야 함.                                                                                                                                                                                  | <input type="checkbox"/> 금회 계획은 하천구역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토양에 대한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어 결정내용 공개시 토양항목은 제외하였으며, 하천저질은 퇴적물오염평가 결과 I~II 등급으로 조사됨.       | -  |
|               | <input type="checkbox"/> 공사 시 소음·진동으로 피해가 없도록 저감 대책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며, 예측 소음·진동 결과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민원이 발생할 경우 지역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추가적인 소음·진동 저감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함.                                                                                                                                     | <input type="checkbox"/> 금번 단계는 기본계획 수립단계로 정량적인 예측에 어려움이 있으며, 기본투입장비를 기준으로 소음도를 예측하였으며, 향후 실시 계획 시 정량적인 예측을 수행후 지역주민과 협의하여 저감방안을 수립하겠음. | -  |

| 구 분           | 초안 검토의견                                                                                                                                                                                                                                                                                                                                                                                                                                                                                                                                                        | 반영계획                                                                                                                                                                                   | 비고 |
|---------------|----------------------------------------------------------------------------------------------------------------------------------------------------------------------------------------------------------------------------------------------------------------------------------------------------------------------------------------------------------------------------------------------------------------------------------------------------------------------------------------------------------------------------------------------------------------|----------------------------------------------------------------------------------------------------------------------------------------------------------------------------------------|----|
| 인천광역시<br>관련부서 | Ⅲ. 수질환경과                                                                                                                                                                                                                                                                                                                                                                                                                                                                                                                                                       |                                                                                                                                                                                        |    |
|               | 1) 수환경의 보전(수질)                                                                                                                                                                                                                                                                                                                                                                                                                                                                                                                                                 |                                                                                                                                                                                        |    |
|               | <input type="checkbox"/> 하천 내 에 의한 우수, 토사 등 공사 시 비점오염원 등 오염물질 저감방안을 철저히 수립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함<br>- 당해 소하천의 유지·보수(우수, 토사 등 공사시) 등을 실시할 경우, 「소하천의 유지·보수 등에 관한 세부기준」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0-40호(2020.7.30.) 규정에 따라, 오염퇴적물 준설, 퇴적토 준설, 하상 정리 등 규정 등을 이행하여야 함.<br>1) 오염퇴적물 준설 : 도시하수, 농업용수, 축산폐수, 산업폐수 등의 유입으로 소하천이나 호소에 퇴적되어 수질오염의 주원인으로 작용하는 오염퇴적물 준설<br>2) 퇴적토 준설 : 하도의 퇴적토가 저수로의 변형, 취수구의 폐쇄, 사주의 발생, 호수나 저수지의 담수량 감소 등을 일으켜 하천의 이·치수 기능과 환경 저해의 원인이 되므로 퇴적토사 준설<br>3) 하상정리 : 토석, 모래, 자갈 등 하천 부산물의 채취, 홍수 시 유수소통을 위한 단면 확대, 수질개선 확보를 위한 퇴적토 제거 등을 통해 하상단면 정리 | <input type="checkbox"/> 물환경보전법 제 72조에 따라 비점오염원처리 대상시설 해당여부를 검토한 결과 금회 사업은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어 비점오염원 저감방안을 제시하였으며, 향후 실시설계시 해당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설치여부를 결정토록하였으며, 금회 계획소하천내 준설 및 하상정리 계획은 제외하였음. | -  |
|               | 2) 수환경의 보전(수리·수문)                                                                                                                                                                                                                                                                                                                                                                                                                                                                                                                                              |                                                                                                                                                                                        |    |
|               | <input type="checkbox"/> 공사 시 하천의 기존 선형 및 구배를 최대한 유지하고, 하상 구조를 불필요하게 훼손하지 않는 등 자연성을 보전하고 갈수기 유속감속, 정체에 따른 부정적인 수질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과도한 하천 저수로의 확장은 지양하여야 함<br>※당해 소하천의 보전(수리·수문)을 실시할 경우 「소하천의 구조·시설에 관한 세부기준」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0-39호(2020.7.30.) 규정에 따라 소하천의 구조 및 시설 설치 기준 규정 등을 이행하여야 함.                                                                                                                                                                                                                                                                             | <input type="checkbox"/> 금회계획 수립시 하천의 기존 선형 및 구배를 최대한 유지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시설물 능력 검토 및 홍수위 검토를 통하여 필요한 구간에 한하여 개수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음.                                                   | -  |
|               | <input type="checkbox"/> 소하천의 구조 및 시설 설치 주요 기준<br>- 소하천의 평면구조, 종단구조 및 횡단구조<br>· 평면구조는 소하천 환경과 기존의 소하천 형상을 고려<br>· 종단구조는 계획홍수량에 대하여 안정성이 확보<br>· 횡단구조는 하도의 상황, 단면 유지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단단면 또는 복단면으로 계획                                                                                                                                                                                                                                                                                                                                                                | <input type="checkbox"/> 금회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은 「소하천설계기준(2018)」 및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지침(2018)」 등 관련 기준을 바탕으로 수립하였음                                                                                    | -  |

| 구 분                                           | 초안 검토의견                                                                                                                                                                                                                                                                                                                                                                                                                                                                                                                                                                                                                                                                                                                                                                                                                                                                                                                                                                                                                                                                                                                                                                                                                                                                                                                                                                                                                                                                                                                                                                                                         | 반영계획                                                                                                                                                                                                                                                                                                                                                                                                                           | 비고                                                                                                                                          |
|-----------------------------------------------|-----------------------------------------------------------------------------------------------------------------------------------------------------------------------------------------------------------------------------------------------------------------------------------------------------------------------------------------------------------------------------------------------------------------------------------------------------------------------------------------------------------------------------------------------------------------------------------------------------------------------------------------------------------------------------------------------------------------------------------------------------------------------------------------------------------------------------------------------------------------------------------------------------------------------------------------------------------------------------------------------------------------------------------------------------------------------------------------------------------------------------------------------------------------------------------------------------------------------------------------------------------------------------------------------------------------------------------------------------------------------------------------------------------------------------------------------------------------------------------------------------------------------------------------------------------------------------------------------------------------|--------------------------------------------------------------------------------------------------------------------------------------------------------------------------------------------------------------------------------------------------------------------------------------------------------------------------------------------------------------------------------------------------------------------------------|---------------------------------------------------------------------------------------------------------------------------------------------|
| 인<br>천<br>광<br>역<br>시<br><br>관<br>련<br>부<br>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치수계획 규모에 따른 홍수량 이하의 홍수 발생 시 범람 방지</li> <li>· 세굴, 침투, 활동 및 침하에 대한 안정성 확보</li> </ul> </li> <li>- 호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호안은 계획홍수위 이하의 유수작용에 대하여 안정성 확보</li> <li>· 형태 및 종류는 수리적 안정성, 사용 재료의 확보 용이성, 경제성, 시공성, 조도, 내구성 및 자연친화성, 경관성, 유지관리 등을 고려하여 계획</li> <li>· 호안은 통수단면적이 축소되지 않도록 설치</li> </ul> </li> <li>- 하상유지시설, 보, 어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상유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상류·하류의 소하천 세굴방지를 위한 보호공 설치</li> <li>· 보는 전도, 활동, 지지력, 침하, 파이핑에 대하여 안정성 확보</li> <li>· 어도는 물 흐름 장애 및 퇴적을 고려하여 하천의 유심과 연결되는 위치에 설치</li> </ul> </li> <li>- 수문, 통관 및 통문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문은 하상이 안정되어 있고 소하천 관리에 장애가 없는 곳에 설치하며, 만곡부, 수충부 및 교량 등의 구조물 주변은 피하여야 함</li> <li>· 통관 및 통문은 제방과의 접촉면을 따라 발생하는 침투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계획</li> </ul> </li> <li>- 내수배제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수배제시설의 펌프는 진동으로 인한 제방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방과 거리를 두어 설치하거나 진동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li> <li>· 조작을 위한 전기시설은 홍수로 침수되지 아니하도록 설치</li> </ul> </li> <li>- 방수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수로는 분담된 유량이 안전하게 흐르도록 수리·구조적 안정성 확보</li> </ul> </li> <li>- 저류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류시설의 유입시설은 유입유량을 안전하게 통과시키고 주변 시설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구조</li> </ul> </li> <li>- 하구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구시설은 파랑, 조석, 해일 및 홍수로부터 안전하도록 설치</li> <li>· 이수·치수·환경·수질·지하수 및 염도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li> </ul> </li> <li>- 여울과 소, 식재, 친수시설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울과 소, 식재의 위치와 형식은 소하천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리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자연친화적인 구조로 계획</li> </ul> </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하천설계기준 및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지침을 참고하여 제방계획을 수립하였음.</li> <li>- 소하천설계기준 및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지침을 참고하여 호안계획을 수립하였음.</li> <li>- 금회 계획에 하상유지시설, 보, 어도 계획은 배제하였음.</li> <li>- 계획수립시 좌기내용을 반영하여 배수통관계획을 수립함.</li> <li>- 금회 계획수립시 내수배제시설은 배제하였음.</li> <li>- 금회 계획수립시 방수로는 배제하였음.</li> <li>- 금회 계획수립시 저류시설은 배제하였음.</li> <li>- 금회 계획수립시 하구시설은 배제하였음.</li> <li>- 금회 계획수립시 여울과 소, 식재, 친수시설 계획은 배제하였음.</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li> <li>-</li> <li>-</li> <li>-</li> <li>-</li> <li>-</li> <li>-</li> <li>-</li> <li>-</li> </ul> |

| 구 분           | 초안 검토의견                                                                                                                                                                     | 반영계획                                                                                                                                                                        | 비고 |
|---------------|-----------------------------------------------------------------------------------------------------------------------------------------------------------------------------|-----------------------------------------------------------------------------------------------------------------------------------------------------------------------------|----|
| 인천광역시<br>관련부서 | Ⅳ. 하수과                                                                                                                                                                      |                                                                                                                                                                             |    |
|               | □공사 중 발생하는 하수(오수, 우수)는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맞게 적정처리하도록 계획 하시기 바라며, 기타 하수관련 필요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구청과 협의 바람.                                                                                  | □향후 소하천정비공사 실시설계시 하수관로 등 지장물 관련 내용은 관련부서와 협의토록 보고서에 수록하겠음                                                                                                                   | -  |
|               | □2035년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이 승인 (2020.09.25.)됨에 따라 우수관로 설계 시 지선 및 간선에 대한 강우강도식 [1850.1610/(t-6329+7.2119), 설계빈도 50년] 적용하시기 바람.                                                     | □금회 계획시 최근강우를 이용하여 확률강우량 및 강우강도식을 재 산정하였으며, 전 유역에 대하여 설계빈도 50년을 적용하였 음                                                                                                      | -  |
|               | □하수도시설의 계획 및 설계, 시공 시 『하수도설계기준(’19. 11. 환경부)』, 『공공하수도시설 설치사업 업무지침(’20.6. 환경부)』, 『인천광역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20.09.)』 및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조례』 등을 적용하고, 같은 기준 및 지침 등이 변경 될 경우에는 변경된 기준을 적용. | □하수도시설의 계획 및 설계, 시공 시 관련 최신기준 및 지침을 적용 하겠음.                                                                                                                                 | -  |
|               | □본 사업으로 인한 공공하수도의 신·증설 및 이설이 발생할 경우 사업자 비용부담으로 설치(공사)하며, 하수도법의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사업 준공 시 하수도법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 관리대장 및 전산화자료를 공공하수도 관리청에 제출                                             | □본 사업으로 인한 공공하수도의 신·증설 및 이설이 발생하는 경우 원인자부담으로 설치(공사)하겠 으며, 하수도법의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사업준공시 공공하수도 관리대장 및 전산화자료를 공공하수도 관리청에 제출하겠음.                                                      | -  |
|               | □공공하수도 설치 등 관련사항이 있을 경우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2조(공공하수도설치 및 관리범위) 규정에 의거 공공하수도 관리청과 사전 협의.                                                                                       | □공공하수도 설치 등 관련사항은 관련법규에 의거 공공하수도 관리청과 사전 협의하겠음.<br>1)우·오수관 설치현황, 저축여부, 설치계획 관련 해당부서와 별도 협의하겠음.<br>2) 기존 차집관로 저축여부 등은 하수도시설물 관리자인 인천환경공단과 별도 협의하고 차집관로가 파손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겠음. | -  |

| 구 분           | 초안 검토의견                                                                                                                                                                                                                                                                                                                                                                                                                                                                                                                                                                                                                                                                                                                                                                                                                                            | 반영계획                                                                                                                                                                                                                                                                                                                                                                                                                       | 비고 |
|---------------|----------------------------------------------------------------------------------------------------------------------------------------------------------------------------------------------------------------------------------------------------------------------------------------------------------------------------------------------------------------------------------------------------------------------------------------------------------------------------------------------------------------------------------------------------------------------------------------------------------------------------------------------------------------------------------------------------------------------------------------------------------------------------------------------------------------------------------------------------|----------------------------------------------------------------------------------------------------------------------------------------------------------------------------------------------------------------------------------------------------------------------------------------------------------------------------------------------------------------------------------------------------------------------------|----|
| 인천광역시<br>관련부서 | <p>V. 자원순환과</p> <p>□공사 및 운영 시에 발생하는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정처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생활폐기물)</b> 재활용 증진을 통한 생활폐기물 발생 최소화 방안 등 해당 지자체 폐기물처리계획을 반영하여 지역 실정에 맞게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함.</li> <li>- <b>(사업장폐기물)</b> 당해 현장 또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 할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대상 여부에 대해 확인하고, 같은 법 제17조 및 제18조 규정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 사업장폐기물 처리 규정 등을 이행하여야 함.</li> <li>-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배출자는 수탁자가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게 폐기물을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한 후 위탁하여야 함.</li> <li>- <b>(지정폐기물)</b> 공사 시행 시 폐유 등 지정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보관, 배출 기준 등을 철저히 준수하고, 부적정 보관으로 인한 주변 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함.</li> <li>- <b>(임목폐기물)</b> 훼손되는 수목은 조경업자, 인근주민 및 사업장에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외의 불가피하게 폐기물로 발생하는 임목폐기물은 전문 업체에 전량 위탁처리 하여야 함.</li> </ul> | <p>□공사 시 발생하는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정처리토록 하겠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리수거함을 설치하여 생활폐기물의 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폐기물 처리 계획을 수립하였음.</li> <li>- 공사시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대상 여부를 검토하고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의무 및 처리규정 등을 이행토록 하겠음.</li> <li>- 발생하는 폐기물은 전량 위탁처리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며, 위탁업체의 처리 능력을 고려하여 이행토록 하겠음.</li> <li>- 매립폐기물 발생시 좌기와 같이 이행하겠음.</li> <li>- 금회 계획수립시 임야지역은 제외하여 수목의 훼손은 발생하지 않으며, 일부 조경수목은 전문업체에 위탁처리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음.</li> </ul> | -  |
|               |                                                                                                                                                                                                                                                                                                                                                                                                                                                                                                                                                                                                                                                                                                                                                                                                                                                    |                                                                                                                                                                                                                                                                                                                                                                                                                            |    |

| 구 분                                           | 초안 검토의견                                                                                                                                                                                                                                                                                                                                                                                                                                                                                                                                                                                                                                                                                                       | 반영계획                                                  | 비고 |
|-----------------------------------------------|---------------------------------------------------------------------------------------------------------------------------------------------------------------------------------------------------------------------------------------------------------------------------------------------------------------------------------------------------------------------------------------------------------------------------------------------------------------------------------------------------------------------------------------------------------------------------------------------------------------------------------------------------------------------------------------------------------------|-------------------------------------------------------|----|
| 인<br>천<br>광<br>역<br>시<br><br>관<br>련<br>부<br>서 | <p>V. 자원순환과</p> <p>□건설폐기물은 배출, 수집·운반, 보관, 중간 처리의 기준 및 방법에 의해 적정 처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 사업 추진 시 시설물 철거, 건축공사 등으로 인한 건설폐기물이 다량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오니 폐기물 종류별, 성상별 분리배출을 철저히 하여 재활용 가능 폐기물이 매립 처분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함.</li> <li>- 혼합 폐기물은 성상에 따라 소각, 매립, 재활용 등으로 구분하여 처리하되 직매립 방지를 위한 혼합폐기물 처리계획을 수립하고 직매립을 최소화 하는 노력을 하여야 함.</li> <li>- 폐기물 처리계획 수립 시 건설폐기물 종류별 처리방법,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의 발주 및 위·수탁 계약, 배출자 신고, 운반·보관·처리기준, 순환골재 의무사용 등은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환경부 예규 제659호, 2019.8.19. 시행)에서 규정하는 기준을 따라야 함.</li> <li>-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건설현장에서 5톤 이상의 폐기물이 발생될 경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발생예상량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폐기물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 관할 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li> </ul> | <p>□좌기 의견을 본안에 명기하여 향후 시행계획단계에서 이행 할 수 있도록 제시하겠음.</p> | -  |
|                                               | <p>□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의무사용 이행 철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 규정에 따라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제38조 규정에 따라 착공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계획서」를 관할 군·구 건설폐기물 담당부서에 제출(미제출 시 과태료 100만원 부과)</li> <li>-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범위)</li> </ul>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의무사용 건설공사) 도로(공사구간 폭 2.75미터, 길이 1km[농어촌도로 200미터] 이상, 포장면적 9천㎡[농어촌도로 2천㎡] 이상), 산업단지 조성(15만㎡ 이상), 하수관로,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공공처리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공사, 택지개발사업(30만㎡ 이상), 물류터미널 건설공사 및 물류단지의 개발공사, 노상(노외)주차장 설치공사, 매립시설 복토공사</p> </div>                                                                      | <p>□좌기 의견을 본안에 명기하여 향후 시행계획단계에서 이행 할 수 있도록 제시하겠음.</p> |    |

| 구 분           | 초안 검토의견                                                                                                                                                                                                                                                                                                                                                                                                                                                                                                                                                                                                                                                                                                                                                                                                                                                                      | 반영계획                                                  | 비고 |
|---------------|------------------------------------------------------------------------------------------------------------------------------------------------------------------------------------------------------------------------------------------------------------------------------------------------------------------------------------------------------------------------------------------------------------------------------------------------------------------------------------------------------------------------------------------------------------------------------------------------------------------------------------------------------------------------------------------------------------------------------------------------------------------------------------------------------------------------------------------------------------------------------|-------------------------------------------------------|----|
| 인천광역시<br>관련부서 | <p>V. 자원순환과</p> <p>※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제11호에 따라,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거나 같은법 제2조제15호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기관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일정 구조·규모·용도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포함</p> <p>- 「인천광역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시행 2020.7.14.)</p> <p><b>(순환골재의 사용 범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시 본청·직속기관 및 사업소</li> <li>·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에서 설립한 지방공기업</li> <li>· 군·구(시비보조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li> </ul> <p><b>(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범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지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의 광장 및 공원 조성공사</li> <li>· 되메우기 또는 뒷채움용 골재(모래를 포함한다) 사용 추정량이 300세제곱미터 이상인 수도 및 하수도의 관로공사</li> <li>· 대지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이고, 건축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인 공공청사 및 문화·체육시설 설치 공사</li> </ul> <p><b>(순환골재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순환골재의 용도는 도로 보조기층용, 동상방지층용 및 차단층으로 하고 관로공사의 경우는 기초다짐용 및 채움용으로 하며, 순환골재 의무사용량은 사용용도별로 각각 골재 소요량의 50%이상으로 한다.</li> </ul> | <p>□좌기 의견을 본안에 명기하여 향후 시행계획단계에서 이행 할 수 있도록 제시하겠음.</p> | -  |
|               |                                                                                                                                                                                                                                                                                                                                                                                                                                                                                                                                                                                                                                                                                                                                                                                                                                                                              |                                                       |    |

다. 인천광역시 수질환경과

| 구 분            | 초안 검토의견                                                                                                                                                                                                                                                                                                                                                                                                                               | 반영계획                                                                                                                                                                                                                                                                                                            | 비고 |
|----------------|---------------------------------------------------------------------------------------------------------------------------------------------------------------------------------------------------------------------------------------------------------------------------------------------------------------------------------------------------------------------------------------------------------------------------------------|-----------------------------------------------------------------------------------------------------------------------------------------------------------------------------------------------------------------------------------------------------------------------------------------------------------------|----|
| 인천광역시<br>수질환경과 | I. 총괄의견                                                                                                                                                                                                                                                                                                                                                                                                                               |                                                                                                                                                                                                                                                                                                                 |    |
|                | <p><input type="checkbox"/>본 계획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관내 소하천의 효율적 이용과 체계적 정비를 위하여 소하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검토 의견과 여타 관계 행정기관 및 주민의견 수렴결과를 종합, 그 내용 및 반영 여부를 요약 제시(각 기관 및 주민 의견수렴 구분)하고 반영된 의견은 해당항목에 작성·제시하여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검토 의견보다 강화된 보전대책을 강구하거나 의견 간의 상충 등의 사유로 반영되지 아니한 의견에 대하여는 미반영 사유와 함께 대안을 제시</li> <li>- 각 항목별 예측·평가에 따른 저감방안을 공사시와 운영시로 구분하여 최종적으로 반영할 저감방안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확정·제시</li> </ul> | <p><input type="checkbox"/>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검토 의견과 관계 행정기관 및 주민의견 수렴결과를 종합하여 그 내용 및 반영 여부를 요약 제시하고 반영된 의견은 해당항목에 작성·제시하겠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장상황에 맞는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제시토록 하며, 미반영된 의견에 대해서는 사유와 함께 대안을 제시하겠음.</li> <li>-금회 사업은 소하천정비종합계획으로 운영시에 따른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어 운영시 예측은 제외하였음.</li> </ul> | -  |
|                | <p><input type="checkbox"/>전략환경영향평가 검토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환경영향, 예측의 부적정 등으로 주변환경에 악영향이 발생하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사전에 이에 대한 원인 분석을 실시하고 본 협의내용 외 별도의 추가대책을 신속히 강구·시행하여 환경관련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함</p>                                                                                                                                                                                                                                                  | <p><input type="checkbox"/>전략환경영향평가 검토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환경영향, 예측의 부적정 등으로 주변환경에 악영향이 발생하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사전에 이에 대한 원인 분석을 실시하고 본 협의내용 외 별도의 추가대책을 신속히 강구·시행토록 계획하겠음.</p>                                                                                                                                          | -  |
|                | II. 항목별 검토의견                                                                                                                                                                                                                                                                                                                                                                                                                          |                                                                                                                                                                                                                                                                                                                 |    |
|                | 1. 수환경의 보전(수질)                                                                                                                                                                                                                                                                                                                                                                                                                        |                                                                                                                                                                                                                                                                                                                 |    |
|                | <p><input type="checkbox"/>하천 내 초기강우에 의한 우수, 토사 등 공사 시 비점오염원 등 오염물질 저감방안을 철저히 수립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함</p>                                                                                                                                                                                                                                                                                                                    | <p><input type="checkbox"/>공사시 초기강우에 의한 비점오염물질 발생으로 인하여 하천의 수질 및 수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물돌리기공법 등의 저감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음.</p>                                                                                                                                                                                       | -  |



| 구 분                                                | 초안 검토의견                                                                                                                                                                                                                                                                                                                                                                                                                                                             | 반영계획                                                                                                                                              | 비고 |
|----------------------------------------------------|---------------------------------------------------------------------------------------------------------------------------------------------------------------------------------------------------------------------------------------------------------------------------------------------------------------------------------------------------------------------------------------------------------------------------------------------------------------------|---------------------------------------------------------------------------------------------------------------------------------------------------|----|
| 인<br>천<br>광<br>역<br>시<br><br>수<br>질<br>환<br>경<br>과 | II. 항목별 검토의견                                                                                                                                                                                                                                                                                                                                                                                                                                                        |                                                                                                                                                   |    |
|                                                    | 1. 수환경의 보전(수질)                                                                                                                                                                                                                                                                                                                                                                                                                                                      |                                                                                                                                                   |    |
|                                                    | <p>-당해 소하천의 유지·보수(우수, 토사 등 공사시) 등을 실시할 경우, 「소하천의 유지·보수 등에 관한 세부기준」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0-40호(2020.7.30.) 규정에 따라, 오염퇴적물 준설, 퇴적토 준설, 하상 정리 등 규정 등을 이행하여야 함.</p> <p>1) 오염퇴적물 준설 : 도시하수, 농업용수, 축산폐수, 산업폐수 등의 유입으로 소하천이나 호소에 퇴적되어 수질오염의 주원인으로 작용하는 오염퇴적물 준설</p> <p>2) 퇴적토 준설 : 하도의 퇴적토가 저수로의 변형, 취수구의 폐쇄, 사주의 발생, 호수나 저수지의 담수량 감소 등을 일으켜 하천의 이·치수 기능과 환경 저해의 원인이 되므로 퇴적토사 준설</p> <p>3) 하상정리 : 토석, 모래, 자갈 등 하천부산물의 채취, 홍수 시 유수소통을 위한 단면 확대, 수질개선 확보를 위한 퇴적토 제거 등을 통해 하상단면 정리</p> | <p>□소하천의 유지·보수(우수, 토사 등 공사시) 등을 실시할 경우, 「소하천의 유지·보수 등에 관한 세부기준」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0-40호(2020.7.30.) 규정에 따라, 오염퇴적물 준설, 퇴적토 준설, 하상 정리 등 규정 등을 이행하겠음.</p> | -  |
|                                                    | II. 항목별 검토의견                                                                                                                                                                                                                                                                                                                                                                                                                                                        |                                                                                                                                                   |    |
|                                                    | 2. 수환경의 보전(수리·수문)                                                                                                                                                                                                                                                                                                                                                                                                                                                   |                                                                                                                                                   |    |
|                                                    | <p>□공사 시 하천의 기존 선형 및 구배를 최대한 유지하고, 하상 구조를 불필요하게 훼손하지 않는 등 자연성을 보전하고 갈수기 유속감속, 정체에 따른 부정적인 수질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과도한 하천 저수로의 확장은 지양하여야 함</p> <p>※ 당해 소하천의 보전(수리·수문)을 실시할 경우 「소하천의 구조·시설에 관한 세부기준」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0-39호(2020.7.30.) 규정에 따라 소하천의 구조 및 시설 설치 기준 규정 등을 이행하여야 함.</p>                                                                                                                                                                                              | <p>□금회계획 수립시 하천의 기존 선형 및 구배를 최대한 유지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시설물 능력 검토 및 홍수위 검토를 통하여 필요한 구간에 한하여 개수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음.</p>                               | -  |
|                                                    | <p>□소하천의 구조 및 시설 설치 주요 기준</p> <p>- 소하천의 평면구조, 종단구조 및 횡단구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면구조는 소하천 환경과 기존의 소하천 형상을 고려</li> <li>· 종단구조는 계획홍수량에 대하여 안정성이 확보</li> <li>· 횡단구조는 하도의 상황, 단면 유지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단단면 또는 복단면으로 계획</li> </ul>                                                                                                                                                                                                                        | <p>□금회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은 「소하천설계기준(2018)」 및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지침(2018)」 등 관련 기준을 바탕으로 수립하였음</p>                                                                | -  |

| 구 분                                                | 초안 검토의견                                                                                                                                                                                                                                                                                                                                                                                                                                                                                                                                                                                                                                                                                                                                                                                                                                                                                                                                                                                                                                                                                                                                                                                                                                                                                                                                                                                                                                                                                                                                                                                                                        | 반영계획                                                                                                                                                                                                                                                                                                                                                                                                                           | 비고 |
|----------------------------------------------------|--------------------------------------------------------------------------------------------------------------------------------------------------------------------------------------------------------------------------------------------------------------------------------------------------------------------------------------------------------------------------------------------------------------------------------------------------------------------------------------------------------------------------------------------------------------------------------------------------------------------------------------------------------------------------------------------------------------------------------------------------------------------------------------------------------------------------------------------------------------------------------------------------------------------------------------------------------------------------------------------------------------------------------------------------------------------------------------------------------------------------------------------------------------------------------------------------------------------------------------------------------------------------------------------------------------------------------------------------------------------------------------------------------------------------------------------------------------------------------------------------------------------------------------------------------------------------------------------------------------------------------|--------------------------------------------------------------------------------------------------------------------------------------------------------------------------------------------------------------------------------------------------------------------------------------------------------------------------------------------------------------------------------------------------------------------------------|----|
| 인<br>천<br>광<br>역<br>시<br><br>수<br>질<br>환<br>경<br>과 | II. 항목별 검토의견                                                                                                                                                                                                                                                                                                                                                                                                                                                                                                                                                                                                                                                                                                                                                                                                                                                                                                                                                                                                                                                                                                                                                                                                                                                                                                                                                                                                                                                                                                                                                                                                                   |                                                                                                                                                                                                                                                                                                                                                                                                                                |    |
|                                                    | <p>2. 수환경의 보전(수리·수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치수계획 규모에 따른 홍수량 이하의 홍수 발생 시 범람 방지</li> <li>· 세굴, 침투, 활동 및 침하에 대한 안정성 확보</li> </ul> </li> <li>- 호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호안은 계획홍수위 이하의 유수작용에 대하여 안정성 확보</li> <li>· 형태 및 종류는 수리적 안정성, 사용재료의 확보 용이성, 경제성, 시공성, 조도, 내구성 및 자연친화성, 경관성, 유지관리 등을 고려하여 계획</li> <li>· 호안은 통수단면적이 축소되지 않도록 설치</li> </ul> </li> <li>- 하상유지시설, 보, 어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상유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상류·하류의 소하천 세굴 방지를 위한 보호공 설치</li> <li>· 보는 전도, 활동, 지지력, 침하, 파이핑에 대하여 안정성 확보</li> <li>· 어도는 물 흐름 장애 및 퇴적을 고려하여 하천의 유심과 연결되는 위치에 설치</li> </ul> </li> <li>- 수문, 통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문은 하상이 안정되어 있고 소하천 관리에 장애가 없는 곳에 설치하며, 만곡부, 수충부 및 교량 등의 구조물 주변은 피하여야 함</li> <li>· 통관은 제방과의 접촉면을 따라 발생하는 침투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계획</li> </ul> </li> <li>- 내수배제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수배제시설의 펌프는 진동으로 인한 제방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방과 거리를 두어 설치하거나 진동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li> <li>· 조작을 위한 전기시설은 홍수로 침수되지 아니하도록 설치</li> </ul> </li> <li>- 방수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수로는 분담된 유량이 안전하게 흐르도록 수리·구조적 안정성 확보</li> </ul> </li> <li>- 저류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류시설의 유입시설은 유입유량을 안전하게 통과시키고 주변 시설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구조</li> </ul> </li> <li>- 하구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구시설은 파랑, 조석, 해일 및 홍수로부터 안전하도록 설치</li> <li>· 이수·치수·환경·수질·지하수 및 염도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li> </ul> </li> <li>- 여울과 소, 식재, 친수시설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울과 소, 식재의 위치와 형식은 소하천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리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자연친화적인 구조로 계획</li> </ul> </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하천설계기준 및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지침을 참고하여 제방계획을 수립하였음.</li> <li>- 소하천설계기준 및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지침을 참고하여 호안계획을 수립하였음.</li> <li>- 금회 계획에 하상유지시설, 보, 어도 계획은 배제하였음.</li> <li>- 계획수립시 좌기내용을 반영하여 배수통관계획을 수립함.</li> <li>- 금회 계획수립시 내수배제시설은 배제하였음.</li> <li>- 금회 계획수립시 방수로는 배제하였음.</li> <li>- 금회 계획수립시 저류시설은 배제하였음.</li> <li>- 금회 계획수립시 하구시설은 배제하였음.</li> <li>- 금회 계획수립시 여울과 소, 식재, 친수시설 계획은 배제하였음.</li> </ul> | -  |

라. 남동구 환경보전과

| 구 분                                      | 초안 검토의견                                                                                                                                                                                    | 반영계획                                                                                                                                               | 비고 |
|------------------------------------------|--------------------------------------------------------------------------------------------------------------------------------------------------------------------------------------------|----------------------------------------------------------------------------------------------------------------------------------------------------|----|
| 남<br>동<br>구<br><br>환<br>경<br>보<br>전<br>과 | I. 총괄의견                                                                                                                                                                                    |                                                                                                                                                    |    |
|                                          | <input type="checkbox"/> 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검토의견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시 반드시 반영되도록 조치하여야 함.                                                                                                        | <input type="checkbox"/> 금회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초안 검토의견의 반영여부를 검토하여 제시하였음.                                                                               | -  |
|                                          | <input type="checkbox"/> 환경영향평가서는 우리구 평가서 초안 검토의견과 여타 관계행정기관 및 주민의견 수렴결과를 주민의견 수렴결과란에 종합하여 그 내용 및 반영여부를 요약제시(각 기관 및 주민의견 수렴 구분)하고 반영된 의견은 해당항목에 작성·제시하여야 함.                                | <input type="checkbox"/> 한강유역환경청 및 관계기관의 초안검토의견을 종합하여 반영여부를 제시하였음.                                                                                 | -  |
|                                          | <input type="checkbox"/> 본 사업의 공사 및 운영 시 환경·재해영향평가 검토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 또는 예측 부적정 등으로 인한 주변 환경에 추가적인 영향이 있거나, 있을 것으로 우려 될 경우 본 검토내용 외에 추가적으로 별도대책을 신속히 강구 시행하여야 할 것임.                     | <input type="checkbox"/> 금회 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상에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 또는 예측 부적정 등으로 인한 주변 환경에 추가적인 영향이 있거나, 있을 것으로 우려 될 경우 본 검토내용 외에 추가적으로 별도대책을 신속히 강구 시행하겠음. | -  |
|                                          | <input type="checkbox"/> 관련법규에는 없으나 중대한 환경문제를 야기할 사안에 대해서는 환경문제 경과를 전망하고 대책을 수립 실시 할 것.                                                                                                    | <input type="checkbox"/> 사업시행시 중대한 환경문제를 야기할 사안이 발생할 경우에는 환경문제 경과를 전망하고 대책을 수립토록 하겠음.                                                              | -  |
|                                          | II. 항목별 검토의견                                                                                                                                                                               |                                                                                                                                                    |    |
|                                          | 1. 자연생태환경 분야                                                                                                                                                                               |                                                                                                                                                    |    |
|                                          | <input type="checkbox"/> 야생 동·식물 등 이동경로를 예측·파악하고 사업시행으로 인한 동·식물상의 영향여부 분석·제시 및 자연생태계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input type="checkbox"/> 공사시 야생동식물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자연생태계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저감방안을 수립하겠음.                                                                 | -  |
|                                          | II. 항목별 검토의견                                                                                                                                                                               |                                                                                                                                                    |    |
|                                          | 2. 대기환경 분야                                                                                                                                                                                 |                                                                                                                                                    |    |
|                                          | <input type="checkbox"/> 공사 시 대기질 저감방안을 대기환경보전법상의 비산먼지발생 억제 필요조치의 최소규제에 한정치 말고 동 사업지구 주변 정온시설, 민원발생을 감안하여 내실있고 효과적인 저감방안을 제시하여야 함.<br>- 인천광역시의 ‘비산먼지 엄격한 관리기준’을 준수하여 주변 영향지역에 피해를 최소화 할 것. | <input type="checkbox"/> 공사 시 비산먼지 발생 및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 하기위한 저감방안을 수립하였으며, 공사시행전 지역주민들과 협의하여 효과적인 저감방안을 시행토록 하겠음.                                   | -  |
|                                          | <input type="checkbox"/> 공사기간 중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공사시간의 단축 및 조정, 살수량 증대, 공사장 인근 도로 물청소 등 미세먼지 억제저감조치를 이행하여야 함.                                                        | <input type="checkbox"/> 공사기간 중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경우 좌기와 같은 억제 조감조치를 강화하여 이행토록 계획을 수립하겠음.                                                       | -  |

| 구 분                                           | 초안 검토의견                                                                                                                                                           | 반영계획                                                                                                                    | 비고 |
|-----------------------------------------------|-------------------------------------------------------------------------------------------------------------------------------------------------------------------|-------------------------------------------------------------------------------------------------------------------------|----|
| 남<br>동<br>구<br>청<br><br>환<br>경<br>보<br>전<br>과 | II. 항목별 검토의견                                                                                                                                                      |                                                                                                                         |    |
|                                               | 3. 수환경 분야                                                                                                                                                         |                                                                                                                         |    |
|                                               | <input type="checkbox"/> 공사 시 유류 등 공공수역으로 유출될 경우를 대비하여 방제대책을 수립하고 사업지구 내 방제장비 비치 및 유사시 비상연락체계를 구축 할 것.                                                            | <input type="checkbox"/> 공사 시 유류유출 사고를 대비하여 방제대책 및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겠음.                                                       | -  |
|                                               | <input type="checkbox"/> 절·성토 공사 시 토사유출에 따른 수환경에 미치는 영향 예측과 토사유출 방지대책(측구, 가배수로, 침사지 등)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야 함                                                             | <input type="checkbox"/> 금회 계획은 기본계획단계로 구체적인 공사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세부적인 저감방안을 수립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향후 실시설계 단계에서 세부적인 저감대책을 수립토록 하겠음. | -  |
|                                               | <input type="checkbox"/> 운영 시 비점오염물질에 의하여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감시설 설치를 계획하여야 하고, 구체적인 유지관리계획(운영주체, 인력, 비용 등의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input type="checkbox"/> 본 계획은 소하천정비종합계획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로서 본안시 점·비점오염물질에 대한 저감방안을 제시하여 향후 실시설계시 저감방안을 이행 할 수 있도록 제시 하겠음.   | -  |
|                                               | II. 항목별 검토의견                                                                                                                                                      |                                                                                                                         |    |
|                                               | 4. 생활환경 분야                                                                                                                                                        |                                                                                                                         |    |
|                                               | <input type="checkbox"/> 공사 시 사업지구 부지경계선의 소음·진동을 지속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하고 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저감방안(가설 방음벽 설치, 장비 분산투입, 전담인력배치 등)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input type="checkbox"/> 금회 계획은 기본계획단계로 구체적인 공사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세부적인 저감방안을 수립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향후 실시설계 단계에서 세부적인 저감대책을 수립토록 하겠음. | -  |
|                                               | <input type="checkbox"/> 슬레이트 지붕 등 석면 함유 건축물을 철거할 경우 석면 처리계획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 <input type="checkbox"/> 실시설계시 석면 함유 건축물을 철거할 경우 석면 처리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저감방안을 수립 하겠음.                                       | -  |
|                                               | II. 항목별 검토의견                                                                                                                                                      |                                                                                                                         |    |
|                                               | 5. 기타                                                                                                                                                             |                                                                                                                         |    |
|                                               | <input type="checkbox"/> 기타관련법에 의거 인·허가를 득할 것.                                                                                                                    | <input type="checkbox"/> 좌기와 같이 이행하겠음.                                                                                  | -  |

마. 경기도 시흥시

| 구 분                            | 초안 검토의견                                                                                                                                                                      | 반영계획                                                                                            | 비고 |
|--------------------------------|------------------------------------------------------------------------------------------------------------------------------------------------------------------------------|-------------------------------------------------------------------------------------------------|----|
| 경<br>기<br>도<br><br>시<br>흥<br>시 | I. 검토사항                                                                                                                                                                      |                                                                                                 |    |
|                                | <input type="checkbox"/> 음실천 소하천 정비계획의 과업시점부인 상류지점은 도시관리계획상 자연녹지지역으로 소규모 제소업소가 밀집되어있어, 해당 지역 하수차집 및 비점오염저감 대책 등 단기적인 수질 개선방안 수립 필요<br>※ 음실천 수질등급 VI(매우나쁨), 신천 수질등급 II(약간 좋음) | <input type="checkbox"/> 금회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시 수질 개선방안을 수립하여 제시하겠음.                                  | -  |
|                                | <input type="checkbox"/> 하천수질 조사결과(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224페이지)에도 언급한 바와 같이 음실천의 수질이 매우나쁜 상태인 만큼, 정비계획에 하수 차집시설 반영 등 오염원 유입 차단방안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 <input type="checkbox"/> 금회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시 수질 개선방안을 수립하여 제시하겠음.                                  | -  |
|                                | <input type="checkbox"/> 공사로 인하여 토사 등 수질오염물질이 공공수역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방지대책을 강구할 것.                                                                                                   | <input type="checkbox"/> 공사시 토사유출등으로 인하여 수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물돌리기 공법 등과 같은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제시하겠음. | -  |
|                                | <input type="checkbox"/> 음실천이 시흥시 「신천」으로 유입됨에 따라 음실천 소하천 정비 시 수질오염물질 및 불명수 유입등의 수질오염방지대책 및 만수하수처리장 증설·하수관로 정비 등 중장기적 대책을 통한 수질개선이 필요함.                                       | <input type="checkbox"/> 음실천의 수질오염방지대책에 대해서 중·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제시하였음.                              | -  |
|                                | <input type="checkbox"/> 남동구 방재하수과-6983(2020.06.01.)호 의거 음실천-신천 연결 수문박스 기협의 사항대로 진행예정임.                                                                                      | <input type="checkbox"/> 기 협의 사항을 내용을 준수하겠음.                                                    | -  |
|                                | <input type="checkbox"/> 사업시행시 시흥시 하천구역(신천)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다면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추후 협의 바람.                                                                                           | <input type="checkbox"/> 좌기와 같이 이행 하겠음.                                                         | -  |
|                                | <input type="checkbox"/> 신천 접속부 재해방지용 역류방지 시스템 설치 검토                                                                                                                         | <input type="checkbox"/> 신천 자연형하천 조성공사에 음실천합류부 수문설치가 계획되어 있어 별도의 역류방지 시스템 설치계획은 수립하지 않음.        | -  |

남동구 고시 제2021-76호

## 소하천 예정지의 지정 및 지형도면에 관한 고시

「소하천정비법」 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제4항에 따라 소하천구역으로 편입될 소하천 예정지를 지정하였음을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 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은 남동구청 방재하수과에 갖추어 놓았으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4월 30일

남 동 구 청 장

| 수계(水系)명 | 소하천명 | 소하천 예정지                      |        |                          |
|---------|------|------------------------------|--------|--------------------------|
|         |      | 지번 및 지목                      | 면적(㎡)  | 지정 사유                    |
| 신 천     | 음실천  |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br>268대 등 71필지 | 20,384 | 소하천정비종합계획<br>(변경)수립으로 지정 |

첨부서류: 1. 소하천 예정지로 포함된 토지의 세목조서

2. 해당 소하천 예정지의 지형도면으로서 1천500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도면